

2024학년도 동계 이화글로벌프론티어 최종보고서

기후소송 이후 개선입법 방향성 제안
-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중심으로

팀 〈Where GREEN Begins〉

제1장

서론

1. 탐사 주제 제시
2.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¹⁾ 기존 문헌에 대한 논의 요약

1. 기후소송
 - 1.1 대한민국 기후소송: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
 - 1.2 대한민국 기후소송 판결 해석
 - 1.3 기후소송과 전환금융의 연관성
2. 전환금융
 - 2.1 국내외의 전환금융 논의 현황
 - 2.2 기존 연구의 한계점

제2절¹⁾ 글로벌 기후소송 판결 및 전환금융 연구

1. 기후소송
 - 1.1 글로벌 기후소송 동향
 - 1.2 대한민국 기후소송 판결에 대한 국외의 평가
 - 1.3 전환금융과 기후소송의 연관성: 기후소송-전환금융-그린워싱 사이클
2. 전환금융
 - 2.1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 2.2 전환금융의 개념
 - 2.3 전환금융의 필요성과 전망
 - 2.4 전환금융과 탄소노미

2.5 전환금융 현황 비교

- 1) 영국
- 2) EU: 독일
- 3) 일본
- 4) 싱가포르
- 5) 대한민국

제3절¹⁾ 최종 연구 결과

1.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

- 1.1 개념 정의
- 1.2 Taxonomy 활용
- 1.3 탄소고착화 리스크
- 1.4 중앙은행의 역할

2. 대한민국 전환금융 시행을 위한 핵심 요소

- 2.1 중소기업 지원
- 2.2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 수립
- 2.3 Taxonomy 개정

3. 최종 제안: 산·관·학 협력을 통한 전환금융 시장 형성

- 3.1 공정한 전환 고려
- 3.2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한 연속적 기후 정책 수립

제3장

결론

1. 탐사 주제 핵심 내용 요약
2. 연구의 의의
3. 후속 연구 방향 제시
 - 3.1 전환 계획 연구
 - 3.2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금융 교육 방안 연구

부 록

[부록1] 국내 인터뷰 내용 정리

[부록2] 국외 인터뷰 내용 정리

[부록3] 자체제작 홍보물 및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참고문헌

제1장

서론

1. 탐사 주제 제시
2.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1 탐사 주제 제시

본 연구는 ‘기후소송 이후 개선입법 방향성 제안 -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후소송 이후 추진해야 하는 개선입법 과정에서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환금융을 강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전환금융의 논의 배경과 시행 현황, 전환금융의 역할과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2024년 9월부터 국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1월 영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위기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증가 등의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파리협정의 각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 및 기업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재난¹⁾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2018년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1인시위인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Climate Strike)’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국의 ‘멸종저항운동(Extinction Rebellion)’ 등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 생태적 재앙을 초래한 정부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²⁾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기후 대응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기후소송’이 중요한

1) 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 재산 · 인명 피해를 의미함.

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각 국 정부와 기업의 기후 대응에 책임을 물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실행을 압박하기 위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소송의 확산 배경에는 2015년 6월에 1심이 선고된 네덜란드의 우르헨다(Urgenda) 사건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책임이 인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³⁾ ‘우르헨다 사건’으로 불리는 위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보다 강력한 기후대응 정책을 촉진하는 기후소송 외에도, 개별 기업에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 사례 또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스위스 여성 시니어 클럽(Verein KlimaSeniorinne Schweiz)’이 스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후재난에 대한 여성 노인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판결’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 그리고 기후소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후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추가적인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국의 정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⁴⁾, 개별 기업들은 기후소송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본사를 이전하거나⁵⁾ 언번들 REC⁶⁾등을 악용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친환경인 ‘척’ 하는 등 그린워싱을 여전히 자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후소송 이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 및 논의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실감하여 본 고의 연구 주제를 수립하였다.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개선입법 과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므로, 제한적인 기후대응 예산을 보장하는 기존의 기후대응 정책을 넘어, 보다 실질적

2) 박시원,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3, no. 1, 2021, pp.39-81.

3) 박태현, 「기후변화소송: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2019 3호, 2019, p. 3.

4) “Swiss parliament defies ECHR on climate women’s case”, (BBC), 2024.06.13., <https://www.bbc.com/news/articles/cl55ggjqvx7o>. (접속일: 2025.03.10.).

5) “[Trend Insight] 로얄더치셀, 본사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 기후소송 때문?”, 〈Impact On〉, 2023.09.2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67>, (접속일: 2025.03.10.).

6)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증서만 분리해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빅테크 기업들, ‘언번들 REC’ 구매로 배출량 감축 눈속임?’), 〈ESG경제〉, 2024.08.2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1>, (접속일: 2025.03.10.).

이고 지원 중심적인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미시경제적으로도 기업과 가계에 자산 손실을 초래한다.⁷⁾ 이러한 기후리스크는 실물 경제로의 파급 경로를 거쳐 결과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전이시키며 금융 체계 전반의 안정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 그 영향의 결과는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보험 리스크, 운영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등으로 분류되는 금융 리스크로 전이된다.⁸⁾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중심의 해결 방안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정책은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라는 두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영향에 맞추어 나가는 방법이다. 반면 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모두 포함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적응과 완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되어 둘 중 어떠한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일명 <스턴 보고서(Stern Review)>⁹⁾가 발간된 이후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적응과 완화를 서로 대척되는 개념으로 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⁰⁾ 더 나아가, 2025년 1월 2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 역시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위와 같은 국내외의 기후소송 동향 및 전환금융 논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법정’이라는 사법체계 내에서 논의하고, 이러한 기후소송 이후의 개선입법 방향성을 ‘전환금융’ 중심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7) “복합위기 시대…기업 환경 리스크 어떻게 넘나”, <Planet Literacy>, 2024.07.01., <https://planetliteracy.co.kr/jemogeobseum-4/>, (접속일: 2025.03.10.).

8) 류기봉 외 6인,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2024, pp.2.

9) 2005년 영국 정부의 의뢰로 저명한 경제학자 Nicholas Stern이 작성함. 기후변화를 방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그 심각성을 강조한 해당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가장 종합적인 자료로 평가됨.

10) Stern Review Team,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11)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01. 02., pp.49.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환 금융에 대한 기존 문헌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 연구와 국내 전문가 인터뷰, 최종적으로는 해외 탐사를 통해 전환금융의 정의와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전환 금융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UNGC Korea(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가 발간한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¹²⁾와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방안 연구’¹³⁾를 주로 확인하였으며, 해외 자료는 OECD가 발간한 ‘전환금융 가이드선(Guidance on Transition Finance)’¹⁴⁾를 참고하여 국내외 비교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소송 동향, EU Taxonomy 및 K-Taxonomy, 전환금융을 이해하였고, 전환금융에 대한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진척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해외 탐사에 앞서 기존 연구 분석과 함께 국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후소송 및 전환 금융과 관련된 연구를 선행하였다. 국내 인터뷰는 전환금융의 이해도 파악 및 대한민국 기후소송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기후정책의 한계, 기후소송 과정, 헌법불합치 판결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개선입법 과정에서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신뢰할 수 있고 달성 가능한 NDC와 전환금융의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또한, 전환금융 도입 이후에도 기후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환 과정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본 팀은, 기후소송과 전환금융을 연구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전환금융 도입 이후 기후소송을 피하기 위한 K-Taxonomy 연계 방안과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도출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기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팀이 파악한 기존 논의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용어 및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
- K-Taxonomy의 복잡성
- 전환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및 금융 교육 부족

국내 탐사 종료 이후 국외 탐사 과정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기후소송 연구자 및 금융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환금융에 대한 실무 경험들을 수집하였다. 현지 탐사를 진행한 영국, 독일 두 국가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사례를 추가적으로 탐구하여 전환금융의 현황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전환금융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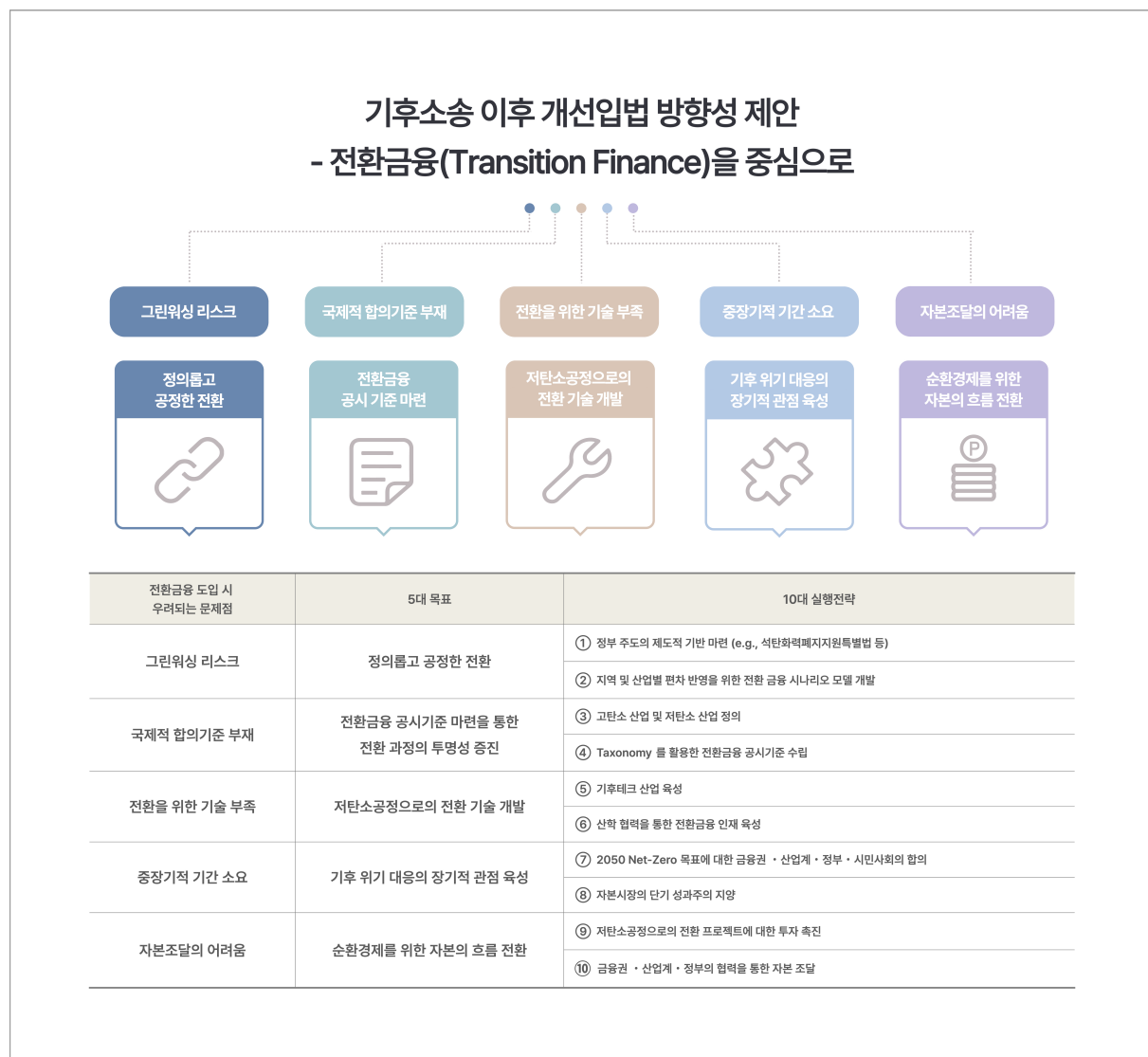
1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 2023.

13)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방안 연구」, 2020.

14) OECD, 「[OECD Guidance on Transition Finance](#)」, 2022.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내 기존 논의의 한계점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전환금융 정의, EU Taxonomy 활용도 등에 대한 질문을 인터뷰 진행 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금융 5대 목표 및 10대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인터뷰이의 답변을 통해 전환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 답변의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구성 및 편집 절차를 거친 후 본 고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그림 1〉 전환금융 5대 목표 및 10대 실행전략



출처 : 저자 작성

제2장

본론

제1절¹ 기존 문헌에 대한 논의 요약

제2절² 글로벌 기후소송 판결 및 전환금융 연구

제3절³ 최종 연구 결과

제2장.

본론

제1절 | 기존 문헌에 대한 논의 요약

1 기후소송

1.1. 대한민국 기후소송 :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제8조 1항에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규정하였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내 첫 기후소송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기후소송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뜻하며, 기업의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 소송 같은 ‘사법소송’과 정부나 국가기관에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이나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인허가 및 정부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공법소송’으로 구분된다.¹⁵⁾ 앞서 언급한 국내 첫 기후소송은 ‘공법소송’으로서, 국가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환경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고자 제기되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회원 19명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여 청소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을 포함한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후소송단’이, 2022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국

15) “법의 언어로 기후위기에 맞서기”, 〈서울대저널〉, 2023.12.18., <http://www.snuin.com/news/62864>. (접속일: 2025.03.10.).

내 기후소송 총 네 건의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고는 총 255명에 이른다. 위 네 가지 소송을 하나로 묶어 진행한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판결’이라는 점, 그리고 약 81명의 태아, 영유아, 10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위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한 것은 불충분하다
- ②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아니한 것(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 미설정)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 감축 목표를 전혀 설정하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1항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이 미흡한 경우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파리협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와 구체적 비율 자체가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 정책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을 추진할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 개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2. 대한민국 기후소송 판결 해석

1) 기후소송 승소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

기후소송에 있어서는 기후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원고 적격’은 대한민국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었던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국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①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헌법재판소가 가진 여러 심사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에 해당되며,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기후소송에서 국가의 기후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를 헌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전략을 통해 기후 보호는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원고 적격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원고 적격은 기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팀은 법무법인 지향 인권경영 전문 신유정 변호사(이하 인권경영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은 민중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 원칙이기에 적합한 원고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기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 사례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이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가진 원고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2) 기후소송 판결에 대한 인터뷰이들의 평가

① 긍정적 평가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기후소송 판결을 ‘기적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환경권 보장 판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았다.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과소보호금지원칙과 의회 유보 원칙을 위헌으로 판결한 사례가 드물었으며, 이는 환경권과 같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이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어, 헌법소원의 심사 기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심사 기준이 낮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근거로 위헌을 판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기본권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과소보호금지원칙과 원고 적격을 활용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부정적 평가

본 팀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이 명확히 나뉘었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법학 분야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의 배출 목표가 부재한 부분만 위헌으로 판결되었을 뿐, 이전의 목표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후소송에서는 환경권의 법적 의미와 규범력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환경권이 피상적인 의미에 불과한지 혹은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실질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시가 부재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기후소송의 법적 기초로서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립하는 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최종 평가

인권경영 전문 변호사는 ‘법원은 본질적으로 사후적 구제 기관이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의 핵심적 의미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사후적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이러한 점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빗대어 설명하였는데, 국회는 양궁시합에서 활을 쏘는 역할, 즉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활을 쏘고 난 뒤, 점수만 매기는 역할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제정된 법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기후소송 판결 이후

2024년 10월 16일,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의 공동 주체로 기후소송 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¹⁶⁾가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2025년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 법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씽크탱크와 협력하여 다양한 감축경로를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⁷⁾

기후소송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부처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 기존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위와 같은 후속 조치들은 법률 개정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16) “[참가안내] 후속 토론회 -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2024.10.08., <http://climate-strike.kr/5891/>, (접속일: 2025.03.10.).

17) 기획재정부, “2025년 사회1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합동 보도자료”, 2025년 1월 10일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w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177&menuNo=4010100, (접속일: 2025.03.10.).

1.3. 기후소송과 전환금융의 연관성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선입법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판결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기초가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NDC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며, 국가의 감축 목표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¹⁸⁾

- 첫째,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
- 둘째, 감축목표의 설정 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함으로써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 셋째, 앞선 두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정부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파리협정 제4.1조)’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제4.3조)’하여 NDC를 정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¹⁹⁾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몫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후소송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정부의 기후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NDC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상쇄’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탄소상쇄는 기업이나 조직이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지 않고 외부 사업을 통해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또는 기업, 기관이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크레딧(Credit)으로 교환, 판매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구매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채택하는 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탄소상쇄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데, 2021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자발적 탄소시장은 2030년,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⁰⁾

하지만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대만큼의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18) “[헌재 최신판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한국법학원〉, 2024.09.11.,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25312>, (접속일: 2025.03.10.).

19) 최창민,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부합하는 2035 NDC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공정배분 분석」, 『환경법과 정책』, 2025, 33, pp.113-170.

20) “ESG 용어 1분 해설 탄소상쇄”, 〈한경ESG〉, 2023.12.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09983i#:~:text=%ED%83%84%EC%86%8C%EC%83%81%EC%87%84%EB%8A%94%20%EA%B8%B0%EC%97%85%EC%9D%B4%EB%82%98.%EA%B5%90%ED%99%98%2C%20%ED%8C%90%EB%A7%A4%ED%95%A0%20%EC%88%98%20%EC%9E%88%EC%8A%B5%EB%8B%88%EB%8B%A4..>, (접속일: 2025.03.10.).

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이하 SBTi)’²¹⁾는 탄소상쇄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부분의 탄소상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²²⁾ 또한, SBTi는 2024년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이 탈탄소화 노력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업들이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탄소상쇄에 의존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기후 목표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²³⁾

결국, 탄소상쇄 제도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근본적인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감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해당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금융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부문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금융부문이 취하는 정책은 기후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 팀은 기후위기 양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역이용’이란, 자본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시장 형성이 필요한 곳에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환경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을 일반적으로 녹색금융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탄소 부문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고탄소 부문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²⁵⁾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소송 이후 개선입법 과정에서 수립할 새로운 NDC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러한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개선입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1)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세계자연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의 공동 협력 아래 발족되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움직임에 동참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의미함. 이를 위해 기업들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도록 전문적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 (이선미, 「과학적 감축 전략 짜기…SBTi 철저 해설」, 『환경ESG』, 2022, p. 9.)

22) “탄소상쇄권, 탈탄소화 노력 지연시키고 기후금융 감소시켜”, 〈Impact On〉, 2024.08.0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idxno=12228>. (접속일: 2025.03.10.).

23) SBTi, “The role of carbon credits in net-zero pathways”,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2022.

24) 한철, 「기후금융과 기관투자의 역할」, 『과학기술법연구』, 2015, pp.206-243.

25) 이인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 『자본시장포커스』, 2023, p.1.

2 전환금융

2.1. 국내외의 전환금융 논의 현황

1) Taxonomy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이하 ICMA)는 지속가능금융 맥락 하의 'Taxonomy'를 기후, 녹색, 사회, 지속가능 목표를 이행하는 활동, 자산, 프로젝트를 임계와 타깃에 따라 식별하는 분류체계라고 정의한다.²⁶⁾ 즉, Taxonomy는 특정 경제활동이나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인 것이다. EU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친환경 경제로 금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분류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고 EU Taxonomy를 수립하였다. EU를 시작으로 2021년 ASEAN Taxonomy, 2022년 K-Taxonomy가 제정되었다.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명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Taxonomy를 근거로 경제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결정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관련 금융상품을 설계한다.²⁷⁾ 환경적 변화를 위한 공통 기준의 역할을 하는 Taxonomy는 지속가능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전환금융

지난 2024년 8월 27일,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에서 한국, 일본, 홍콩의 금융 감독 당국, 금융회사 및 연구기관들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 정책, 금융기관의 경영 전략, 시장 발전 등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의 발전 상황 및 미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및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금융 지원 전략과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전환금융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⁸⁾

금융위원회 또한 2024년 12월 12일 개최된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에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탄소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

26)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Sustainable Finance - High-level Definitions", 2020, p.5.

27) 장명화,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제798호, p.7.

28) 금융감독원, 이화여자대학교,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컨퍼런스 보도자료", 2024년 8월 27일 보도자료, https://ie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6332&pg=&pp=&ddevice=&search_txt=&topic=&type=J&depth1=B0000&depth2=B0900, (접속일: 2025.03.10.).

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유연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²⁹⁾ 대한민국 정부 또한 지난 2025년 1월 발표된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환금융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³⁰⁾ 전환금융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환금융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금융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12월 18일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이하 TFMR)' 문서를 발표하였다.³¹⁾ 해당 문서는 전환금융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전환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U는 2023년 6월 27일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금융 촉진에 관한 위원회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on Facilitating Finance for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을 발표하였다.³²⁾ 해당 문서는 기업과 금융 기관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환금융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그 역할과 필요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 시장에서의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2. 기존 논의의 한계점

본 팀은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정책 및 금융 시스템을 다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파악한 기존 논의의 한계점을 해당 절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계점은 '용어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본 팀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난 제 21대 국회에서 녹색금융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계류되었으며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전환금융 개념의 불명확성이 지목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환금융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전환금융 개념의 불명확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

29) 금융위원회,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2024년 12월 12일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3595?srchCtg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20%EA%B0%81%EC%A3%BC>, (접속일: 2025.03.10.).

30)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기후정책 뜯어보니", (ESG경제), 2025.01.0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0>, (접속일: 2025.03.10.).

31) HM Treasury &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Independent report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 GOV.UK, 2023.12.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nsition-finance-market-review>, (접속일: 2025.03.10.).

32) 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Sustainable finance package 2023", European Union, 2023.06.13.,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sustainable-finance-package-2023_en, (접속일: 2025.03.10.).

석팀 수석 조사역이자 본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황재학 교수(이하 황재학 교수)와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이하 SFOC)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환금융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명확히 설정된 곳은 EU, 일본, 싱가포르 세 곳이라고 언급하며, 각 기관이 전환금융에 대해 각기 다른 용어나 정의를 갖고 있어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유럽계 대표 은행인 A 서울지점 지속가능금융팀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정의 외,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각 국가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전환금융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금융 기관 간의 비교나 평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전환금융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첫 번째 한계점의 연장선으로서, 용어와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은 전환금융을 보다 일관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되어있는 EU Taxonomy 및 K-Taxonomy를 활용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에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EU Taxonomy 및 K-Taxonomy는 전환금융이 아닌 ‘지속가능금융’ 혹은 ‘녹색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매우 복잡한 구조와 방대한 내용을 가진 도구이기 때문에 ‘전환금융에 K-Taxonomy를 활용할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팀은 앞서 언급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인터뷰이들은 전환금융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출처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EU Taxonomy 및 K-Taxonomy를 활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경로로 추가 논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한계점은 ‘기후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및 금융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팀은 국내외 인터뷰를 통해 국외에 비해 현재의 국내 교육은 주로 금융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전환금융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래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포괄적인 환경 및 금융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 번째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제2절 | 글로벌 기후소송 판결 및 전환금융 연구

1 기후소송

1.1. 글로벌 기후소송 동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이전, 해외 주요 기후소송에서는 국가의 감축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은 약 2,180건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이후 개시된 소송이 전체의 24%를 차지하는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³³⁾

영국 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소송팀의 Joana Setzer 변호사(이하 LSE 그랜섬 연구소 기후소송팀 변호사)는 본 팀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핵심이 기후변화 과학이나 법률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인 소송을 기후소송으로 정의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원고들이 기후변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고, 해당 목표를 위해 법원을 활용하는 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LSE 그랜섬 연구소 기후소송팀은 ‘2024 전 세계 기후소송 동향(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중요한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³⁴⁾ 또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은 새롭게 부상한 현상이 아닌 2015년부터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유형의 소송이며, 초기에는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 NGO나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불과하였으나 앞선 사례들을 바탕으로 점차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기후 프레임워크 소송(Climate Framework Litigation)’이라고 명칭한다고 설명하였다.³⁵⁾

‘기후 프레임워크 소송(Climate Framework Litiga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한 소송이 아닌, 정부의 기후 정책 목표와 실행 방식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건 이상의 ‘기후 프레임워크 소송(Climate Framework Litigation)’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소송들은 1심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33) “2023년 5월까지 제기된 전 세계 기후소송 2341건…그랜섬연구소, ‘기후위성’ 소송 ↑”, <그리니엄>, 2023.07.03., <https://greenium.kr/news/26252/>, (접속일: 2025.03.10.).

34) Setzer J and Higham C (2024)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35) 해당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은 기후솔루션(SFO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_국문”, SFOC, 2025.01.20., <https://forourclimate.org/research/559>, (접속일: 2025.03.10.)).

LSE 그랜섬 연구소 기후소송팀은 본 팀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소송’을 또 다른 중요한 기후소송 흐름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환경단체 7여 곳이 다국적 석유기업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 사례³⁶⁾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룬 소송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인터뷰이는 비록 법원 판결이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소송 또한 존재하지만,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형성하는 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일부 기업은 기후소송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입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1.2. 대한민국 기후소송 판결에 대한 국외의 평가

LSE 그랜섬 연구소 기후소송팀은 대한민국의 기후소송 사례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초점을 맞춘 특정한 형태의 헌법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기후소송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헌법상 권리가 재확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3. 전환금융과 기후소송의 연관성: 기후소송-전환금융-그린워싱 사이클

전환금융의 핵심 목적은 고탄소 산업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점진적인 변화를 돕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금융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실질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고탄소 사업을 지속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린워싱은 투자자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진짜 녹색 활동이 이루어질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³⁷⁾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23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140건 가량이 그린워싱에 대한 소송이다.³⁸⁾ 이는 전체 기후소송 사례 중 그린워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린워싱은 전환금융의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에 전환금융 또한 기후소송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사례³⁹⁾ 또한 그린워싱 문제와 관련이 깊다.

36) 최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판결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4, no. 1, 2022, pp.373-412.

37) 이옥수, 「환경을 빙자한 이익 추구: 거짓 녹색 (그린워싱)」, 『타우마제인』, 2024.

38) “2023년 5월까지 제기된 전 세계 기후소송 2341건…그랜섬연구소, ‘기후워싱’ 소송 ↑”, 〈그리니엄〉, 2023.07.03., <https://greenium.kr/news/26252/>. (접속일: 2025.03.10.).

39)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명확히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청정에너지 투자나 탄소 배출 감축을 강조하며 시장에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한 것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통해 더 큰 감축 목표와 전환을 이행할 것을 요구함.

이 외에도 전환금융과 그린워싱, 그리고 이에 대한 기후소송 사례는 EU Taxonomy 개정 이후 제기된 기후 소송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합이 유럽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⁴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EU Taxonomy 개정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동으로 포함시킨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 ‘EU Taxonomy’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그린워싱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담고있다.⁴¹⁾

미국에서도 석유기업의 그린워싱을 상대로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다국적 석유기업인 엑손모빌(ExxonMobi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BP),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을 상대로 미국 뉴욕시가 830만 명 시민을 대표해서 제기한 기후 소송이 대표적이다.⁴²⁾ 뉴욕시는 이들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투자를 줄이면서도 ‘그린워싱’ 즉,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본 팀이 그린워싱 기후소송으로 서술한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전환금융 시행 과정에서 그린워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후소송 판결 이후 기존 탄소중립녹색기본법의 위험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개선입법을 진행하여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후소송 판결 이후의 해결책으로 전환금융을 시행할 경우 그린워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다시 기후소송으로 연결되며 하단의 그림과 같은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한다.

본 팀은 이러한 ‘기후소송-전환금융-그린워싱 사이클’을 바탕으로 국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 Torsten Jäger(이하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은 인터뷰 중 그린워싱 소송 리스크를 경고하며, 기업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의 경제활동이 실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평판 리스크나 소송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전환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소송의 피고로 언급된 위의 기업들은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내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환금융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본 팀은 전환금융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면 전환금융이 활성화되어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그린워싱 위험을 막아드리지 않고, 소송 리스크 또한 완화할 수

40) “유럽 환경단체, 유럽사법재판소에 EU 집행위 상대로 기후소송 제기”, <그리니움>, 2024.09.03., <https://greenium.kr/news/56541/>, (접속일: 2025.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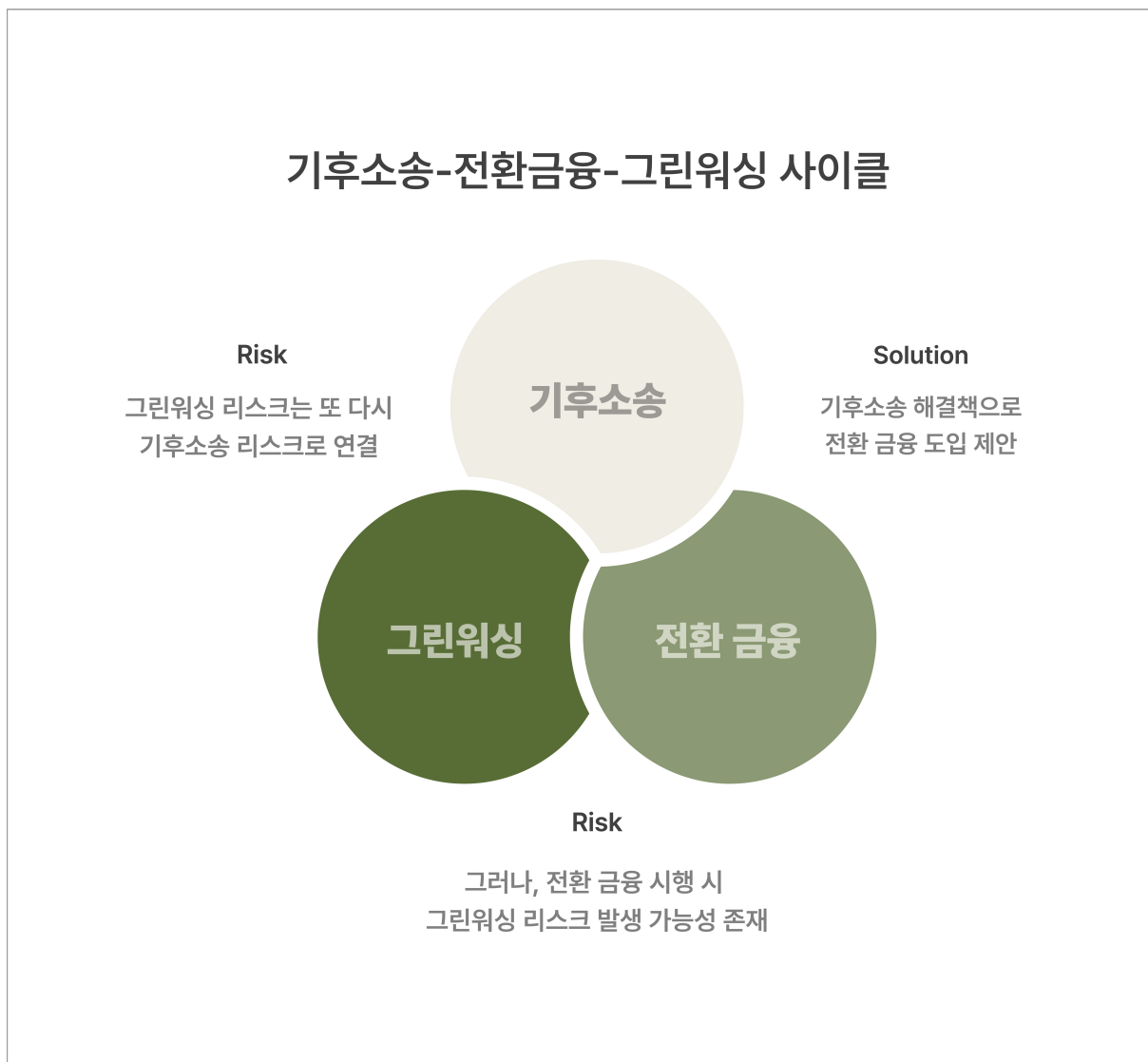
41) 원고측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기후변화 완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이 EU의 기후 목표와 배치된다고 주장함.

42) 뉴욕시는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 자신들을 ‘기후변화 해결자’로 포장하는 한편,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화석 연료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FMR 저자 Vanessa Harvard-Williams 변호사(이하 TFMR 저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Guardrails)’를 마련하여 전환이 필요한 고배출 부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였다.

즉, 기후소송 판결 이후 추진해야 하는 개선입법 과정은 대한민국에 ‘전환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기법을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그린워싱 관련 소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림 2〉 전환금융과 기후소송의 연관성 : 기후소송-전환금융-그린워싱 사이클



출처 : 저자 작성

2 전환금융

2.1.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본고의 제1절에서 언급한 ‘역이용’의 일환으로, 본 팀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본의 흐름 형성, 즉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제안한다.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지난 2025년 1월 2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³⁾ 전환금융의 필요성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당 정책 방향은 EU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도 동일하다. 본 팀은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⁴⁴⁾에서 수립한 목표⁴⁵⁾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약 2,590억 유로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TFMR 저자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금융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 시 자금의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인식이 확산된 이후, 금융권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S-UNEP Centre의 Carola Menzel-Hausherr 센터장(이하 FS-UNEP Centre 센터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준비하였고, 인터뷰이는 ‘금융 부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제 금융 기관들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약속했다며, 전환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2.2. 전환금융의 개념

1) 전환금융 정의

① 전환과 전환 계획의 정의

전환금융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단연 ‘정의의 모호성’일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는 전환금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불명확하다. 본 팀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전환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이 정의하는 전환금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팀의 연구 초기에는 대한민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환금융만을 고려하였으나, 국외 인터뷰를 통해 ‘전환 과정’에 집중한 ‘전환 계획’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해당 절에서는 각 기관이 정의한 ‘전환’, ‘전환 계획’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43) 기획재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2025년 1월 2일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together.do>. (접속일: 2025.03.10.).

4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전환’이라는 목표하에 8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류화(Mainstreaming Sustainability) 5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음. (김성진, 「유럽의 그린 딜 동향과 시사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20.).

45) 2045년까지 탄소 배출 6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기후리스크팀 팀장 Guan Schelleken(이하 유럽중앙은행 기후리스크팀 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유럽중앙은행 내에서 정의하는 전환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로 나아가는 지점, 또는 그 경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더욱 단순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탈탄소화 경로’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하게, FS-UNEP Centre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행동 과정들의 집합’이라고 답변하였다. ‘전환’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혹은 결과만을 내포한 개념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탈탄소화 경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동 과정들의 집합’에 대한 개념이다. 즉,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나 야심찬(Ambitious) 전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본 팀은 ‘전환 계획’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탐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의 ‘전환 계획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Transition Plan Network)’의 전환 계획 정책 고문 Kate Ryan(이하 ITPN 전환 계획 정책 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TPN 전환 계획 정책 고문은 전환 계획 수립 시 기후 회복력과 ‘적응(Adaptation)’⁴⁶⁾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환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환은 단순히 속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팀과 인터뷰를 진행한 TFMR 저자의 보고서에서도 ‘전환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출 기관과 투자자에게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 전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전환금융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전환 계획이라 정의하고 있다.⁴⁷⁾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은 또한 전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전환은 순차적으로(step-by-step) 실현되는 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 10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 일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46)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발생한, 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맞추어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조정하여 생태계의 복원성을 증가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의미함. (Robert L. Glicksman, “Climate Change Adaptation: A Collective Action Perspective on Federalism Consideration”, Environmental Law, 40, 2010, pp.1159, 김홍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법제연구』, 48, 2015, 182면에서 재인용.)

47) TFMR, 앞의 글, pp.8-10.

② 전환금융의 정의

본 팀은 앞서 언급한 전환과 전환 계획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은행이나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실질적인 단계인 '전환금융'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함을 인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 기후리스크팀 팀장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전환금융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은행 감독 기관으로서 각 은행의 기후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전환금융을 이미 친환경인 것이 아니라, 친환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으로 정의한다.

FS-UNEP Centre의 센터장은 대부분의 전환금융의 정의는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를 참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감축이 어려운 부문(hard to abate sector)'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환금융은 국가 및 글로벌 상황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환금융의 정의는 각 기관 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관의 역할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각 기관이 정의하는 전환, 전환 계획, 전환금융

구분	전환 (Transition)	전환 계획 (Transition Plan)	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
유럽중앙은행	현재 상태에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상태로 나아가는 탈탄소화 경로	-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의를 따름 (고탄소 배출이나 기타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민간 투자로의 자금 조달)
독일은행협회	고탄소 운영 방식에서 저탄소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전환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계획	고탄소 운영 방식에서 저탄소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금융과 연결한 것
FS-UNEP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행동 과정들의 집합	-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를 참고하여, 감축이 어려운 부문 (hard to abate sector)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지원하는 금융
ITPN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기후회복력과 적응 측면까지 고려한 경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미래의 기온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한 과정	기존의 '녹색금융'에 집중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 사이의 큰 격차를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 기법
TFMR	글로벌 기후 및 자연 목표 (climate and natural goals)와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화 경로의 일부	기업의 전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전환금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회사, 활동이 탈탄소화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

출처 : 저자 작성

2) 기존 기후금융과의 차이점

전환금융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더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후금융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2〉 기후금융, 녹색금융, 전환금융 정의

구분	기후금융 (Climate Finance)	녹색금융 (Green Finance)	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
목적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Mitigation, 기후 적응 Adaptation)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 집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대상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적응 인프라 등)	친환경 · 지속가능 프로젝트 (녹색채권, ESG 투자 등)	고배출 산업의 친환경적 전환 과정 지원
적용범위	기후변화에 국한됨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환경 이슈 포괄	탄소 집약적 산업의 변화 과정에 초점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 세미나,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 발제 자료⁴⁸⁾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는 지속가능금융을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녹색금융은 ‘환경적 요인에 주력하는 금융’을 지향하며,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와 기후변화 적응’에 주력하는 금융이라고 구분하고 있다.⁴⁹⁾ UNEP에서는 지속가능금융, 녹색금융, 기후금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했지만, 실제로 이들 간의 경계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녹색금융, 기후금융, 지속가능금융과 전환금융의 경계는 일부가 겹치기도 하며 동시에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전환금융은 국제적으로 정의가 엄밀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이미 ‘녹색인 것’보다는 ‘녹색으로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금융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⁵⁰⁾

48) 금융위원회, “「미래 변화와 금융의 대응 전략」기조연설”, 2025년 2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ld=BBSTY1&upperNo=84068&fileTy=ATTACH&fileNo=1>, (접속일: 2025.03.10.).

(해당 발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youtu.be/62sR8Wb5wzg?si=SEuqoxMlfyohxn74>)

49) 김이배 외 2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2023, pp.159~179.

50) 이유진 외 9인,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녹색 전환연구소』, 2024, pp.38.

FS-UNEP Centre의 센터장은 투자 목적이 단순히 배출 저감이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녹색 금융이나 기후금융이라 할 수 있지만, 해당 투자가 '전환 계획'에 포함된다면 이는 전환금융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 지속가능금융팀은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은 아직 '녹색'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업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금융이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은 기후금융을 양파에 비유하며, 양파의 가장 안쪽 단단한 부분을 EU Taxonomy의 기술적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그 다음의 겉껍질은 녹색 및 사회적 금융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리고 양파의 가장 바깥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된 전환금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전환금융은 녹색금융과 달리 사업을 고탄소 운영 방식에서 저탄소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 과정을 금융과 연결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속가능금융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와 거버넌스 요소까지 포함하며, 녹색금융은 생물 다양성 및 기후 관련 등 모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기후금융은 이 중에서도 감축이나 기후적응과 같은 기후변화 요소와 관련된 금융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이때, 전환금융은 고탄소 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다는 데서 대체로 기후금융과 녹색금융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한다고 해석한다.⁵¹⁾ 이는 전환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과 기후금융이 '이미 친환경적'인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환경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전환금융은 경제 대부분이 아직 '녹색'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며,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대두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환금융은 현재의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화로 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⁵²⁾ ITPN 정책 고문 또한 녹색금융은 이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데 비해, 전환금융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므로 그만큼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환금융은 녹색금융과 비교했을 때 개념적으로는 더욱 복잡하지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녹색금융이 EU Taxonomy 및 K-Taxonomy에 의해 녹색 자산으로 분류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전환금융은 아직 '녹색'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업이 탄소중립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이해할 수 있다.

51) 위의 논문, pp.38.

52) "기업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전환 계획이 우선". 〈한경ESG〉, 2024.10.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829371>, (접속일: 2025.03.10.).

2.3. 전환금융의 필요성과 전망

1) 전환금융의 필요성

① 고탄소 산업의 점진적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점진적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10.9%, 독일 19.1%, 일본 20.7%, 프랑스 9.8%, 영국 8.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⁵³⁾ 이러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전환금융에 기반한 탈탄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에너지 집약산업의 탈탄소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관련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⁵⁴⁾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제조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기후 친화적 생산 공정이 기존 공정보다 비용이 높거나, 탄소 가격과 운영비용의 변동성이 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⁵⁵⁾ 따라서 녹색 사업만 지원하는 기존의 녹색금융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전환금융이 대두되고 있다.

② 중소기업 多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가 804만 개를 넘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⁵⁶⁾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로 내부 인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를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후 및 금융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도는 자본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제한한다. 즉, 중소기업은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사후 검증 절차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 기후리스크팀 팀장 또한 EU Taxonomy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녹색과 비녹색을 가르는 복잡한 기준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나, 비교적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요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금

53) 송경호, 「대한민국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과 산업 역동성」, 『재정포럼』, 2022, p.36.

54) 대한민국개발연구원,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환경분야」, 『KDI』, 2024, p.127.

55) 위의 글, pp.129.

56)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2022년 804만 개 돌파”, 〈SBS 뉴스〉, 2024.08.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1047, (접속일: 2025.03.10.).

용 지원 방안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역량이 부족하며, 시시각각 변해가는 다양한 규제와 녹색 금융 상품을 이용에 요구되는 서류 작업과 사전 인증 절차는 중소기업과 전환금융 시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전환금융 시장을 거치는 것보다, 기존의 일반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이 포진한 경제구조 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공급망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와 막대한 자본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⁵⁷⁾

따라서 중소기업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환금융 도입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금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전환금융 시장 전망

전환금융은 국제 금융 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강화하면서, 전환금융의 수요와 중요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U는 전환금융을 지속가능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영국은 ESG 관련 규제와 공시기준에 전환금융을 반영하였다. 대한민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는 전환금융이 녹색금융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은 전환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애플 뿐 아니라 실상 막대한 규모의 전환금융을 제공하는 자금조달 모델로서, 정부 차원의 막대한 전환금융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⁵⁸⁾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55조 달러의 전환금융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전히 41조 달러의 투자 기회가 남아있어 금융 기업들에게 전환금융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⁵⁹⁾ 이렇듯, 전 세계는 전환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전환금융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은행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전환금융을 주제로 한 국제 회의를 여는 등 전환금융이라는 개념이 2024년 들어 약 80여 차례 등장하며 이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2030년까지 1,000조 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⁶⁰⁾의 질적·양적 수준은 아직까지 외국보다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인 전환금융을

57)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강화」, 『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2024, p.9.

58) “LNG발전 투자가 전환금융? ‘전환위성’ 막는 법”, 〈SLOWNEWS〉, 2025.01.24., <https://slownews.kr/127091>, (접속일: 2025.03.10.).

59) 최희재, 「녹색금융을 넘어선 ‘전환금융’의 부상」, 『금융경영브리』 제14권, 2024, p.8.

60) 기업금융시장은 간접금융시장(대출)과 직접금융시장(주식, 회사채, 기업어음)으로 구성됨.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역할 수행 및 민관이 협력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2.4. 전환금융과 Taxonomy

Taxonomy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금융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Taxonomy는 특정 경제활동이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지 판단하는 분류 체계이다. 반면, 전환금융은 현재 '완전히 녹색'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과 산업이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전환금융의 궁극적인 목표가 녹색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환금융을 시행하는 기준으로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다. ITPN 정책 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EU Taxonomy가 전환 계획과 전환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며, 서로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전환금융은 EU Taxonomy 및 K-Taxonomy의 이분법적 한계를 보완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5. 전환금융 현황 비교

해당 절에서는 영국, 독일(EU),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의 전환금융 사례를 정리하고, 에너지 집약산업의 탈탄소화 촉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전환금융 시행 핵심요소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은 지속가능금융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민간 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전환금융 투자를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분석 의의를 가진다.

① 연구 현황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2021년 10월 19일에 발표된 '탄소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 Build Banck Greener)'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중간 경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금융을 활용한 전환 전략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특히 영국의 은행은 전환금융을 활용해 기존의 석탄, 석유 산업 등 고탄소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은행인 HSBC, Barclays, Lloyds는 전환금융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녹색금융연구소(GFI, Green Finance Institute) 및 런던정경대 그랜섬 연구소 등 영국 내 여러 연구기관이 전환금융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별 맞춤형 금융 지원 모델과 정책적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랜

섬 연구소는 2024년 2월에 ‘공정한 전환금융 연구소(Just Transition Finance Lab)’을 설립하여, 공정한 전환⁶¹⁾을 위한 금융 솔루션을 실험하고, 우수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중심 연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⁶²⁾

추가적으로 영국 재무부는 2024년 1월, TFMR(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를 발간하였다. TFMR 저자는 TFMR의 핵심 목표는 영국을 전환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 금융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영국은 전환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금융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FMR를 바탕으로 2025년 1월 23일, 전환금융 위원회(Transition Finance Council)가 출범하여,⁶³⁾ 위원장으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의장이자, 전 영국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을 임명하였다. 이는 전환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영국의 의도와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전환금융 위원회는 정부·규제 당국·시장이 TFMR의 권고 사항을 모니터링 및 이행을 추진하며, 영국 및 국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환금융 역량 강화와 참여를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전환금융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의 금융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② Taxonomy 활용 현황

TFMR 저자는 본 팀과의 영국에서 Taxonom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금융연구소(GFI)가 Taxonomy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으나, 해당 작업은 2-3년 전에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2024년 11월 14일, 그린 기술 자문 그룹(GTAG)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영국 정부는 Green Taxonomy 공개 협의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2008년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에 따라 영국 정부가 법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00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안에서는 영국 정부는 ‘녹색’ 또는 ‘지속가능’의 정의를 규정하는 대신, Green Taxonomy의 실제 활용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은 1970 ~ 80년대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와 같이 공공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그 개념이 시작됨. 이후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으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의 이행을 포함하는 현재의 개념으로 발전함. 정의로운 전환은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명시되었으며,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ILO, 2018), 2017년 1차 정의로운 전환 국제포럼 개최, 그리고 2018년 ‘연대와 공정한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개념의 정당성을 확보함. (박경원, 이지웅,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독일 탈석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4, no. 6-1, 2023, pp.699-713.)

62) Just Transition Finance Lab, “The just transition: Transforming the financial system to deliver action”, 2022, p.12.

63) [The Transition Finance Council](https://www.transitionfinancecouncil.org/).

2) EU : 독일

독일은 산업 부분의 구성과 배출량 비중의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① 연구 현황

독일은 EU 내 금융의 중심지로, 전환에 가장 취약한 석탄 및 탄소 집약 경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맞춤형 금융 모델과 정책 지원을 통해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은 전환금융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천연가스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화석연료의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청 기업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세한 기술적 근거를 신청서에 제시하여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의 경우 사업의 운영 시작 후 첫 10년 동안만 허용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⁶⁴⁾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전략을 채택하며, 전환금융을 중요한 기후 대응 도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환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전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환금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해 전환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초로 EU Taxonomy와 같은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환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금융 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전환금융을 위한 채권 발행과 같은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전환금융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고 있으며, 전환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전환금융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여 화석연료 산업 등으로 ESG 투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EU는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에 전환금융 항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⁵⁾

② Taxonomy 활용 현황

EU는 녹색분류체계인 Taxonomy를 최초로 도입한 곳으로, EU Taxonomy는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금융 및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하는 핵심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으며, EU

64) 대한민국금융연구원, 「2023년 경제 전망」, 『대한민국금융연구원』, 2024, pp.33-40.

65) “ESG 백래시 악화”...전환금융이 큰 역할“, 〈ESG경제〉, 2024.08.1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2>. (접속일: 2025.03.10.).

Taxonomy는 각국의 기후금융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모든 신규 금융 활동에 대해 EU Taxonomy를 기준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EU Taxonomy가 금융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TFMR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이, EU Taxonomy는 그동안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EU Taxonomy는 몇 가지 주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분류 기준 해석의 복잡성이다. EU Taxonomy는 기준이 부문 별로 상이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어 기업들이 EU Taxonomy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2025년 1월 12일 EU Taxonomy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류 기준 해석의 복잡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기업들이 보다 쉽게 Taxonomy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되, 환경 목표 달성 기준은 더욱 체계화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2월 중 지속가능성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 중복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EU Taxonomy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⁶⁶⁾ TFMR 저자는 EU Taxonomy가 전 세계 최초로 제작된 만큼 비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이번 EU의 Taxonomy 간소화 발표가 하나의 과정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2월 중 발표될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가 EU Taxonomy를 보다 정교한 분류체계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3) 일본

일본은 재생에너지의 자국 내 충분한 생산이 어렵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아 전통 에너지⁶⁷⁾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본 팀이 해외 탐사를 진행한 국가가 아니지만,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고의 분석에 추가하였다.

① 연구 현황

일본은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사례 발표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 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2020년 탄소 집약적인 사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청정 전환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환금융 지침’을 수립하였다. 해당 지침에는 국제자본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채권원칙의 기본 공시요소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전환금융을 대표하는 사례로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66) “EU Taxonomy, 간소화 초안 발표…규제 아닌 효율화”, 〈Impact On〉, 2025.01.1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660>, (접속일: 2025.03.10.).

67) 통상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을 의미함.

GX 추진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장기적으로는 총 150조 엔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2024년 2월 'Japan Climate Transition Bond'라는 채권으로 10년 만기 GX 채권을 발행하였으며⁶⁸⁾ 지난 2022년 3월 일본항공(JAL)은 전세계 항공사 최초로 전환채권을 발행하였다. 총 670만 달러 규모의 전환채권을 발행하였으며 해당 자금을 활용해 현재 운행중인 항공기를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은 202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수소 기본전략을 개정하고 <산업구조의 GX 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을 내각에서 승인하였으며 10년 종합 로드맵 아래 GX 경제 전환채권 등을 활용한 사전 투자 지원, 성장 지향적 탄소가격 책정 방안 등과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었다.⁶⁹⁾

② Taxonomy 활용 현황

현재 일본은 녹색분류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전환금융의 일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Taxonomy와 같은 정해진 분류 체계가 아닌 각 기관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환금융 지침이 EU Taxonomy나 K-Taxonomy와는 다른 방식으로 탄소 집약적인 프로젝트나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GDP의 19%에 차지하며, 이는 금융업(1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한민국과 유사한 산업구조 특성을 띄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국가로 추가 선정하였다.

① 연구 현황

싱가포르 통화청은 전환금융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 세계 최초, 다중 부문 전환 Taxonomy (Multi-Sector Transition Taxonomy)를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에서는 금융 기관이 친환경 또는 전환 활동(transition activities)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산업 활동을 녹색, 황색(전환 중), 적색(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ASEAN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및 경제 규정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전환금융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래 Taxonomy 활용 현황에서 서술한다.) 다중 부문 전환 Taxonomy는 '전환(Transition)' 활동을 정의하고,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전환 활동이 필요하

68) "What's Plaguing Voluntary Carbon Markets?", (CSIS), 2024.02.02., <https://www.csis.org/analysis/whats-plaguing-voluntary-carbon-markets>, (접속일: 2025.03.10.).

69) 대한민국개발연구원, 앞의 논문, pp.159.

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② Taxonomy 활용 현황

싱가포르는 Taxonomy 를 통해 ASEAN Taxonom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⁷⁰⁾ ‘ASEAN의 지속가능금융 증진에 관한 보고서’⁷¹⁾에서는 ASEAN의 지속가능금융 의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그린 위상을 방지하고 녹색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SEAN 공통의 Taxonomy 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ASEAN Taxonomy 는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버전 1’이 개발되었으며,⁷²⁾ 이는 지속가능금융을 포괄하기보다는 제한된 영역을 다루며⁷³⁾ 녹색금융과 기후금융의 Taxonomy에 가깝다. ASEAN Taxonomy가 다른 Taxonomy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구조와 신호등 체계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ASEAN Taxonomy 는 ‘다층 Taxonomy’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기반체계와 추가 표준의 두 가지 Tier(이하 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반체계는 발전수준이 단일한 결정트리(Decision Tree)에 따라 환경목표와 필수기준을 통해 녹색 기반체계, 황색 기반체계, 적색 기반체제로 구분한다. 반면 추가표준은 특정분야의 경제활동을 활동별 기술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녹색 Plus Standard(이하 PS), 황색 PS, 적색 PS로 분류한다.⁷⁴⁾ 신호등 체계는 싱가포르의 기존 Taxonomy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녹색과 적색 외 황색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황색은 현재로서는 탄소중립 경로를 따르지 않지만 녹색 전환 경로를 따르는 제한된 기간 동안의 활동과 단기적으로 상당한 탄소 저감을 가능하게 하는 일몰 시한이 규정된 활동이 포함된다.⁷⁵⁾

이러한 ASEAN Taxonomy의 구조는 다양한 경제적 발전 단계에 있는 ASEAN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층구조와 신호등 체계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각 국가가 자신의 경제적 특성과 환경 목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ASEAN Taxonomy는 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맞춰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ASEAN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성을 향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Taxonomy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었으며, ASEAN 전체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대한민국

① 연구 현황

현재 대한민국 내 전환금융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정부 및 금융당국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70) ASEAN Working Committee 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Report on Promoting Sustainable Finance in ASEAN](#)”, 2020.04.29.

71) 앞의 논문, pp.68.

72) ASEAN Taxonomy Board (ATB),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2021.11.

73) 최창민, 「ASEAN 지속가능금융 Taxonomy의 검토」, 『환경법연구』, 2022, pp.74-75.

74)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Putting Money Where the Mouth Is”, 〈Eco-Business〉, 2022.04.08., <https://www.eco-business.com/opinion/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putting-money-where-the-mouth-is/>, (접속일: 2025.03.10.).

75) 최창민, 앞의 논문, pp.67-129.

과 함께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금융TF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 (인구, 기후, 기술) 세부 TF를 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기후금융TF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며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후기술에 대한 금융지원과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제 6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공급, 기후금융 역량 제고,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는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⁷⁶⁾ 또한, 2025년 2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저탄소 전환 보증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⁷⁷⁾ 이는 그린유니콘 육성⁷⁸⁾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탄소감축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저탄소경제 전환의 컨트롤타워는 탄녹위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정부 위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라고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미래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 같은 국의 지속가능경제과, 기후대응전략과,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 대응 정책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경제 전환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로 자리 잡지는 못한 실정이다.⁷⁹⁾

② Taxonomy 활용 현황

K-Taxonomy는 EU Taxonomy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⁸⁰⁾ 특히 K-Taxonomy는 녹색금융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를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K-Taxonomy 사용에 있어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본 팀이 수행한 여러 인터뷰에서, K-Taxonomy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에 활용도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대부분의 인터뷰이가 강조하였다.

76)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77) 관계부처합동,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5년 2월 5일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490&menuNo=4010100, (접속일: 2025.03.10.).

78) 탄소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 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을 지칭함.

79) 양용현,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대한민국금융연구원』, 2023, p.13.

80) “EU Taxonomy, 간소화 초안 발표…규제 아닌 효율화”, 〈Impact On〉, 2025.01.1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13660>, (접속일: 2025.03.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12월에 K-Taxonomy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녹색금융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융계와 산업계가 K-Taxonomy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녹색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녹색금융과 녹색 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⁸¹⁾

81) “대한민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법률신문〉, 2025.01.09.,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571>, (접속일: 2025.03.10.).

제3절 | 최종 연구 결과

1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

1.1. 개념 정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기관들이 정의한 전환금융의 의미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기관이 사용하는 용어에 일부 차이가 있어 각각의 정의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몇몇 개념에 대한 합의는 존재한다.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중립 달성’과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경로’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전환금융 정의의 배경으로, 즉 ‘기업의 경제 활동을 탈탄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전환금융의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자금의 투명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 국가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전환금융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오히려 금융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 또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3〉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 인터뷰 내용 발췌

인터뷰 기관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 지속가능금융부서
인터뷰 내용	국내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몇몇 은행이 자체적으로 전환금융의 정의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전환금융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은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이 애매하다. 전환금융, 녹색금융, 기후금융, 지속가능금융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며, 이들 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일부 겹치기도 한다. 일례로, 또 다른 유럽계 은행인 B은행은 자체적으로 전환금융의 정의를 내렸지만, 그들의 정의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일본의 전환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전환 채권을 발행할 때 해당 채권에 대한 해외 자금이 유입이 제한적이었고 일본 보험사 중심으로 순환되는 모습을 보였다.⁸²⁾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용성이 될 것이다. ‘전환금융’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유럽 내의 여러 기관들은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도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용어 정의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환금융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처 : 저자 재구성

82) 이보람, 손원주, 앞의 논문.

〈표 4〉 각 기관이 정의하는 전환, 전환금융

구분	전환 (Transition)	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
유럽중앙은행	현재 상태에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상태로 나아가는 탈탄소화 경로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의를 따름 (고탄소 배출이나 기타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민간 투자로의 자금 조달)
독일은행협회	고탄소 운영 방식에서 저탄소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고탄소 운영 방식에서 저탄소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금융과 연결한 것
FS-UNEP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행동 과정들의 집합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를 참고하여, 감축이 어려운 부문 (hard to abate sector)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지원하는 금융
ITPN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기후회복력과 적응 측면까지 고려한 경로	기존의 ‘녹색금융’에 집중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 사이의 큰 격차를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 기법
TFMR	글로벌 기후 및 자연 목표 (climate and natural goals)와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화 경로의 일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회사, 활동이 탈탄소화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

출처 : 저자 작성

1.2. K-Taxonomy 활용

제2절에 작성한 것과 같이, 전환금융 시행 시 K-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인터뷰를 통해 K-Taxonomy의 활용 정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아래에 후술하였다.

1) 복잡한 구조와 매우 기술적인(technical) 기준

유럽중앙은행의 기후리스크팀 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EU Taxonomy는 매우 복잡하고, EU Taxonomy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강철은 전 세계에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이러한 경우, 풍력 발전소를 어디까지 녹색이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선(cut off)을 그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기술적인(technical)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독일은행협회 또한 현재의 EU Taxonomy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답변하였다. 유럽과 독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제를 고려할 때 약 7개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성만 언급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향력 측면에서 현재의 EU Taxonomy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며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EU Taxonomy 중, 특히 2 단계에서 기후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출판물이나 참고 자료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 EU Taxonomy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환을 위한 해결책이 아닌 단순한 참고 지침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TFMR 저자 또한 EU Taxonomy의 복잡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특히, EU 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EU Taxonomy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적용하거나 참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분법적인 시스템

EU Taxonomy와 K-Taxonomy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분류체계 특성상 이분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수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의 K-Taxonomy는 '녹색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은행협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고탄소 산업 혹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 금융 부문이 고객들의 전환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EU Taxonomy의 이분법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경제 활동들이 EU Taxonomy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EU Taxonomy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어떤 활동이 친환경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만 구분되며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EU Taxonomy와 K-Taxonomy의 주요 한계점인 것이다.

1.3. 탄소고착화 리스크

자금이 고배출 자산으로 흘러가 고착되는 것을 의미하는 탄소고착화는 대부분의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집합 또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가 발간한 ‘전환금융 가이드스(Guidance on Transition Finance)’에서는 전환금융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고착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고착화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나 인프라를 리스크 발생 우려가 낮은 것들과 구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재의 안전장치와 매커니즘은 제한적이기에, 천연가스나 화석연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추가 조치로서 탄소 고착화 현상을 방지하는 매커니즘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1.4. 중앙은행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발간한 ‘기후위기 앞에 선 한국은행, 그 역할을 묻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방침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유한 관점 차이에 근거하여 유럽중앙은행(ECB) 유형, 연준(Fed) 유형, 중국인민은행(The People's Bank of China, PBoC)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5〉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세 유형

	소극대응형 (Fed형)	개입형 (ECB형)	정부연계형 (PBoC형)
특징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역할이며 중앙은행은 모든 경제활동에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된다는 입장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고수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 중앙은행의 전통적 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 흐름	독립성과 중립성 전통이 약한 중앙은행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중앙은행의 책무로 이해
통화정책	기후변화와 관련해 통화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며, 은행 감독은 리스크 파악 및 관리	기존 자산의 탈탄소화를 가장 우선시하며, 강한 금융기관 규제 정책 활용	신용정책 적극적으로 구사
주요 중앙은행	Fed, 호주, 캐나다 중앙은행	ECB,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앙은행	PBoC, 일본, 브라질 중앙은행

출처 : 기후위기 앞에 선 한국은행, 그 역할을 묻다(녹색전환연구소), 저자 재구성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범주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거시정책과의 협력과 연계, 준재정적(quasi-fiscal) 성격의 정책 전통은 정부연계형의 특성, 기후 위기 대응의 관점 차원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사한 개입형의 특성, 실제 정책 수행의 영역에서는 미국 연준(Fed)과 유사한 소극대응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전환금융 시행을 위한 핵심 요소

‘대한민국 전환금융 시행을 위한 핵심 요소’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환금융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을 서술하고자 한다.

2.1.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과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이 대기업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녹색 전환 활동에서 자금 조달과 비용 공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시장 내 중요성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노력이 되고 있으며, 추후 중소기업에도 ESG 공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디스 등 일부 ESG 평가사는 머신러닝에 기반한 자체 모델을 개발하여 자료가 부족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도 중소기업의 ESG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공시 및 비공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간 그린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및 42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 등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금융 수단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여신 제공을 넘어선 ‘공정한 전환’의 원칙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쇠퇴하거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이나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전환금융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2.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 수립

과학적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지속가능금융부터 강조된 내용이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ESG 평가 및 데이터의 중요성도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ESG 평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 부족,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된 ESG 공시로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 배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 부재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기업의 활동을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부족은 지속가능금융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본 팀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해외 인터뷰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환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TPN 정책 고문은 전환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환 계획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strategic and rounded approach)으로서 ‘전환 계획’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3가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탈탄소화,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 전략에는 Scope 1, 2, 3가 포함되는데,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까지 고려해야 하며, 제조업 내의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전략은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 전략으로,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리스크와 새로운 기회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전략은 경제 전반의 전환에 기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은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전환 계획 내에서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기업은 ‘전환’을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전환 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탄소 배출 감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전략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의 기초가 된다. 특히, Scope 1, 2, 3 측정에 대한 내용은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한 내용으로, 인터뷰이는 기업들이 여러 기술적 문제로 인해 Scope 1, 2, 3 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과학적 데이터 문제는 전환 계획 수립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전환 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데 과학적 데이터 수집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EU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관하여 자문하는 독립기구인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e, ESABCC)’를 설립하였는데,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 인식과 후속 조치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취약계층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해당 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수립되고 있다. 이유는 소수자 중심의 과학적 데이터 부족에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특히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보건학적 연구와 과학적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과학적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과학적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전환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나 소송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데이터 수집,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전환 계획의 전환 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여 정부는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이 과학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력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전환’에 기반한 대응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팀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환 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환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는 초기 단계에 있음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환 계획의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금융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은 여전하다. 전환 활동을 위한 금융이 제공된다는 것, 즉 전환금융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할만한 전환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시장에 알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학적 데이터 연구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 수립의 밑바탕이 되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전환 투자의 탄소중립 기여를 가늠하여 투자의 용이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업에 알리고, 기업이 이 데이터를 수집 및 연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전환금융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속가능(ESG) 금융에서부터 강조된 과학적 데이터 수집,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전환금융 시행에서도 핵심 요소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2.3. Taxonomy 개정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K-Taxonomy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목적을 둔 기준으로, 앞서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금융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EU Taxonomy 개정 방향과 전환금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은행협회 지속가능금융팀 팀장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의 EU Taxonomy는 이미 방대한 분량과 복

잡한 기준으로 인해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EU Taxonomy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프레임워크와 보다 명확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유럽중앙은행 기후리스크팀 팀장은 EU Taxonomy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핵심 부분은 유지하면서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필요성에 따라 간결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시 간소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EU Taxonomy의 적용을 단순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EU Taxonomy 기반 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방대한 양과 이분법적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녹색과 비녹색 산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그린워싱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즉, 녹색 산업과 비녹색 산업을 구분하고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일정한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EU Taxonomy를 전환금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탄소 고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전환 위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속한 전환금융 도입을 위한 기준과 틀을 마련하되, 고탄소 업종 및 재계, 민간 금융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논의 구조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LNG 및 수소발전 투자 확대에 전환금융이 집중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접근법 또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본의 경로 기반 접근법은 기업의 전환 계획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팀은, 전환금융이 필요한 기업, 즉 녹색 산업을 판별할 때는 K-Taxonomy를 활용하고, 이후 해당 기업의 전환 가능성과 전환 경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경로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야심찬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전환금융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세 가지 제안은 공정한 전환 즉,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한 전환은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산관학 협력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최종 제안

산·관·학 협력을 통해 공정한 전환을 고려한 전환금융 시장 형성

3.1. 공정한 전환 고려

OECD가 발간한 ‘전환금융 가이드선(Guidance on Transition Finance)’에서는 전환금융의 두 가지 주요 과제로 탄소 고착화 리스크와 함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언급하고 있다. ‘공정한 전환’이란 기업 차원에서 전환이 근로자, 공급자,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OECD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전환 계획의 10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공정한 전환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 재숙련 과정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인권, 소비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기업이 탈탄소화 여정의 일환으로 신기술을 사용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신기술을 습득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재훈련 또는 재숙련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를 제안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그리고 전환금융 시행에서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며, 형평성에 근거한 대응 방향에 의해 정립되어야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또한 ‘형평성을 반영한 공정성 고려 사항(fairness considerations, including reflecting A on equity)’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형평성’ 원칙에 입각한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전환은 SFOC 기후금융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석탄이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공정한 전환과 관련한 문제라며, 근로자의 연령대, 기업의 규모, 지역사회의 특징이 모두 결합된 문제이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전환을 법률로 제도화한 독일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내에서도 공정한 전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팀은 기업이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공급자,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즉 공정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한 연속적 기후 정책 수립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전환금융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경제정책의 일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환의 개념은 정책과 시장이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므로, 전환금융 도입을 위해서 전환금융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의 정보 및 경험 부족, 전환 계획과 전환금융의 정의 부재, 예산 설립 미비 등의 문제들로 전환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본 팀이 수행한 국내외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전환금융 시장 형성의 예시로 일본의 GX 리그를 참고하였다. GX 리그는 2023년 2월, 일본 내각이 승인한 탄소중립을 위한 10개년 로드맵의 일부로, 일본의 새로운 탄소시장 구상이 반영된 사례이다. 일본은 GX 리그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독려하고, 기업의 외부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환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팀은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전환금융 컨트롤 타워 신설을 통한 전환금융 시장 형성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시장 형성과 전환금융 도입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환금융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다소비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에 정부와 민간 재원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는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감가상각 기간이 남은 탄소다배출 시설이나 장비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경매나 금융수단의 개발도 전환금융 또는 공정한 전환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환금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즉 산관학 협력 기반 하의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전환금융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기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 전환금융 이슈에 대해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보고서들을 취합해 매 기간 공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내 기후 정책 입안자인 정부 혹은 국회의 임기 기간과 관계없이 산업별, 부문별 전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금융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의 전환금융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환금융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특정 산업군이나 기술군에 맞춘 세부적인 전환금융 정책을 별도의 모듈로 설계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속도에 정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더욱 현실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 모듈화는 추진 체계 간 탄력적인 상호 연동 및 결합을 가능하게 해 전환금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제3장

결론

1. 탐사 주제 핵심 내용 요약
2. 연구의 의의
3. 후속 연구 방향 제시

제3장.

결론

1 탐사 주제 핵심 내용 요약

본 팀은 <기후소송 이후 개선입법 방향성 제안 - 전환금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약 6개월 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외 탐사 이전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후소송과 전환금융, 그리고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대한민국 기후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미흡한 감축 목표 설정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배경과 판결의 법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 인터뷰를 통해 기후소송 승소에 과소보호금지원칙과 원고 적격이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였고, 기후소송이 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파악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기에, 해당 판결에서 명시한 위험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존 논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전환금융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K-Taxonomy의 복잡성과 이로 인해 전환금융 시행 시 활용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의 환경 및 금융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팀은 사전 연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기후소송과 전환금융의 연관성, 저탄소 전환에서의 전환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를 진행하였다. 영국과 독일에서 진행한 해외 탐사에서는 기후소송 판결과 전환금융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후소송이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후소송 동향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기후소송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환금융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이후, 주요 국가들이 기후소송을 통해 기업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조명하였다.

본 팀의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며, 전환금융의 개념과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내 및 해외 인터뷰를 통해, 기존 녹색금융이 '완전히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전환금융은 현재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환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전환금융

의 국제적 현황을 비교하며, 글로벌 전환금융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환금융 도입을 위한 5가지 제안 사항을 서술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후소송과 전환금융의 연계를 탐색하며, 학부생 주도의 연구 분야 개척, 전환금융을 활용한 기후소송 이후의 경제적 대응 모델 제시, 자기주도적 연구 수행, 전환금융 분야 여성 리더로의 성장 기회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인 전환금융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후소송과 연계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본 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가 지향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문적 견해와 실무 경험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소송 이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금융 기법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팀은 해외 인터뷰를 통해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전환금융이 일종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환금융이 기후소송 판결 이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이 법과 정책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환금융이 단순한 금융 기법에서 더 나아가,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기후위기는 전인류가 마주한 범세계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 후속 연구 방향 제시

3.1. 전환 계획 연구

본 팀은 전환금융이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금융 기법이라는 점을 토대로, 일본의 경로 기반 (Pathway-Based) 접근법과 EU의 Taxonomy 체계를 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융합 방식은 기업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가해지는 ‘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 대한 일방적인 단순화는 그린워싱 우려를 가중 시킬 뿐이기에, 일본의 경로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환금융이 필요한 기업, 즉 녹색이 아닌 기업을 판별하고 그 기업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녹색 기업의 상태를 설정할 때는 현재의 K-Taxonomy를 활용하고, 이후 그 기업의 전환 가능성과 전환 경로를 평가할 때는 일본의 경로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기업이 야심찬 전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본 팀의 최종 제안이다. 이러한 융합 방식을 채택할 경우 본고의 주제인 ‘전환금융’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전환 계획'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팀은 영국 TPT(Transition Plan Taskforce)의 전환 계획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존의 전환 계획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대한민국형 산업별 전환 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3.2.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금융 교육 방안 연구

본 팀이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기후위기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란 여유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여성 인재 육성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환금융 인재 육성에 발벗고 나서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기후위기를 금융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내외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해야 한다.

본 팀의 국외 인터뷰 기관 중 한 곳이었던 영국의 런던정경대(LSE) 내에는 'Global School of Sustainability'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학교 안의 학교'의 개념으로,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LSE 100'이라는 필수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기후와 환경 문제가 자신의 전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해당 전공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강의를 필수 과정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임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속 가능 금융 및 리더십을 다루는 온라인 석사 과정을 개설하여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과 같은 개념을 기존 실무 경험과 연결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외 인터뷰뿐만 아니라, 국내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기후금융 전문가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부재로 적재적소에 전환금융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점이 전환금융 미활성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금융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보다 폭넓은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가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 금융 과목 및 학과 신설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부 록

[부록 1] 국내 인터뷰 내용 정리

[부록 2] 해외 인터뷰 내용 정리

[부록 3] 자체제작 홍보물 및 해외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참고문헌

참고

- 본 팀은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기간(2024.09.-2025.02.) 동안 헌법연구관, 환경법 및 헌법 전문 변호사, 전환금융 관련 부처, 통화정책 관련 부처, 기자, 정책입안자 등 기후소송 및 전환금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 중 일부를 부록으로 첨부함.
-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은 인터뷰이의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구성 및 편집하였음.
- 부록의 내용은 인터뷰이가 속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임.

표 목차

- 〈표 1-1〉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Verein KlimaSeniorinne Schweiz)’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1-2〉 ESG 경영 및 인권 경영 자문 전문 변호사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1-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원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1-5〉 기후솔루션(SFOC)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1-6〉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 수석조사역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1-7〉 유럽계 대표 A은행 지속가능금융팀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2-1〉 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2-2〉 ITPN 전환 계획 정책 고문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2-3〉 TFMR 저자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2-4〉 유럽중앙은행(ECB) 기후리스크팀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2-5〉 독일은행협회(BDB) 지속가능금융팀 인터뷰 내용 정리
- 〈표 2-6〉 FS-UNEP 인터뷰 내용 정리

그림 목차

- 〈그림 3-1〉 〈Where GREEN Begins〉 현수막
- 〈그림 3-2〉 〈Where GREEN Begins〉 명찰
- 〈그림 3-3〉 〈Where GREEN Begins〉 PT 자료
- 〈그림 3-4〉 〈Where GREEN Begins〉 팸플렛
- 〈그림 3-5〉 ITPN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 〈그림 3-6〉 LSE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 〈그림 3-7〉 TFMR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 〈그림 3-8〉 유럽중앙은행(ECB)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 〈그림 3-9〉 독일은행협회(BDB)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 〈그림 3-10〉 FS-UNEP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부록1] 국내 인터뷰 내용 정리

1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 (Verein KlimaSeniorinne Schweiz)

- 인터뷰이 : Dr. Elisabeth Stern
- 인터뷰 일시 : 2024년 9월 30일 (월) 20:30
- 인터뷰 장소 : 비대면 인터뷰

1) 인터뷰이 소개

- 기후보호단체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Verein KlimaSeniorinne Schweiz)’ 대표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기후소송의 사회적, 법적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본 인터뷰를 진행함. 약 2,000여 명의 청구인 전원이 63세 이상의 여성 노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스위스 법원의 기각 이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다는 점 등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Verein KlimaSeniorinne Schweiz)’의 기후소송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깊게 살펴보고, 해당 소송이 스위스 내에서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함. 더불어,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향하는 기후재난의 현실과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1〉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Verein KlimaSeniorinne Schweiz)’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이 단체를 설립한 동기는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노년 여성들이 특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난화는 노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003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이상 기후로 인해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2만 5천 명이 여성이었다.
질문 2	기후소송 청구인 설정 중요성에 대한 질문
답변 2	스위스 법원은 우리의 소송은 수용했으나, 개인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단체의 소송이 승인된 점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소송에서 소외된 노년 여성들이 스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학적 데이터 때문이다. 이전에는 유아보다 노년층이 더 많이 사망한다는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 가장 큰 근거였다.
질문 3	기후소송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질문

답변 3	기후소송을 통해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기후소송을 준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언론이 기후소송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대기업, 국가, 국제 기구 등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다. 소송 과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질문 4	유럽사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이후에 대한 질문
답변 4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가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그 의무에 속하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민의 건강권은 스위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유럽 인권협약의 일환이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상원, 하원 모두 기후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우리는 현행 정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위스 정부는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중이다.

2 ESG 경영 및 인권 경영 자문 전문 변호사

- 인터뷰이 : 신유정 변호사
- 인터뷰 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6:00
- 인터뷰 장소 : 법무법인 지향

1) 인터뷰이 소개

- ESG 경영 및 인권 경영 자문 전문 변호사
- ‘기후위기와 노년층 생명권 보호 국회세미나’에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노년층의 생명 위협과 국가의 보호의무’를 주제로 발제 진행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바라보았을 때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더불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파악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2〉 ESG 경영 및 인권 경영 자문 전문 변호사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기후소송 판결 해석에 대한 질문 그동안의 기후소송 판례를 찾아보았을 때,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보다는 사후적 보상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원이 사후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1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1) 본질적으로 법원이라는 기관은 어떠한 피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기관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Swiss Senior Women for Climate Protection의 기후소송에 대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그동안의 기후소송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 임무에 근거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정한 랜드마크 판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중대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판결 자체는 국가의 사전 예방 의무를 강조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3) 원고 적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스위스 법원에서의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민중소송⁸³⁾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과 스위스 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부분 모두 원고가 민중소송을 하고 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그러나, Swiss Senior Women for Climate Protection에 소속된 분들은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후변화로 연관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민중소송이라고 본 이유는 기후변화가 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기 때문인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권리 침해가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질문 2	기후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적인 전략에 대한 질문 원고 적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기후위기에 특히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러한 관계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답변 2	유럽인권협약과 우리나라 헌법은 내용 차이가 있다. 또, 스위스 사례에서 쟁점이 된 권리는 모두 자유권이다. 생명권과 평온한 삶에 대한 권리 모두 자유권적 권리인데,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는 건강권/환경권 등이 모두 사회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는 걸 생명에 대한 임박한 침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입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한 생명 침해라는 건 ‘사형’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 나의 생명이 침해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청구인들은 모두 생명권을 주장한 것에 반해, 헌법재판관은 환경권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훼손됐다’라는 건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두 번째로는 원고의 선정과 입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기획 소송에서든지 적합한 원고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것이 분명한 홍수에 의해서 직접적인 부상을 입었다거나 질병이 생긴 사례라면 입증이 쉬웠을 것이다. 그리고 입증의 문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과학적인 문헌들을 재판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 인권 문제는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면, IPCC 2018년에 발간된 ‘Global Warming of 1.5℃’⁸⁴⁾와 2023년에 발간된 ‘IPCC 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⁸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인권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건학적 연구가 매년 발간되고 있고, 이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3	기후소송 이후 개선입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 지난 기후소송 판결이 더욱 의미미해지기 위해서는 2026년 2월까지 정부에 부과된 개선입법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변 3	전제 사실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인의 둔감함과 제도가 뒤쳐지는 것은 전 세계적이다. 당면 과제로서 지금 다 하고는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감축 가스 배출 감축 그리고 ‘적응(Adaptation)’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

	그래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기준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이다. 정책 결정은 데이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에 대한 통계가 각각 분리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 각각에게 필요한 특수한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 추측을 할 수는 있어도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태 조사나 통계 조사를 수행할 때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 주체인 취약계층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부분도 중요하다.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에 관한 문서는 유관부서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 문서를 확인해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항목에 폭염 상황에 노출된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나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끝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슈에 대해서 땀질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Adaptation)'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그룹을 다양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기후위기에 노출된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넓이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접근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

83)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

84)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

85)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종합보고서로, IPCC 제58차 총회에서 승인됨.

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뷰이 : 이재홍 교수
- 인터뷰 일시 : 2024년 11월 13일 (수) 15:30
- 인터뷰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 인터뷰이 소개

- 헌법학 이론 및 헌법재판 실무 연구
- [학술지논문] 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의 논증구조 - 환경권 보호의 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2025, v.33 no.0, 29-79.
- [학술지논문] 헌법원리로서의 '돌봄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함의 - 법학논집, 2024, v.28 no.3, 63-100.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한국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이 기존의 환경 정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환경 정책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며, 해당 판결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파악함.
- 특히, 인터뷰이는 이번 판결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언급하며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강제력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언급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과 정책 설계 과정의 연구 방향을 수립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대한민국 기후소송 판결에 대한 평가 기후소송 판결 전 교수님께서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헌법과의 접점을 찾지 않으면 헌법소원에서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 설명의 여부가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현재, 원고측은 어떻게 헌법과의 연결성을 찾아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고 보시나요? 헌법 소원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후소송을 이해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이해해야 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1	국회는 양궁시합에서 활을 쓰는 역할, 즉 10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역할이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활을 쓰고 나면 점수만 체크하는 역할이다. 의회가 활을 쓴 결과가 최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이 기준을 매우 이상적으로 세울 수만은 없다. 현실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만들어진 법률을 심사할 때의 기준과 의회가 법률을 만들 때의 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헌법소원에서의 심사 기준은 매우 낮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 기준은 더욱 낮은 편이다. 이번 기후소송 결정은 기적적인 판결이며 환경권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굉장히 나오기 힘든 결정이었다. 판결이 나왔을 때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이 명확히 달랐다. 법학 분야 전문가들은 대단하다고 평가한 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의 배출 목표가 부재한 부분만 위헌으로 판단했을 뿐, 그 전의 목표는 다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은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더불어, 헌법불합치 판결 근거 중 하나였던 의회유보원칙 또한 헌법재판소 역사상 단 한 번 밖에 없었던 매우 드문 사례이다. 따라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심사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에 해당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이 속성 안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후퇴한 부분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되는 환경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환경권의 규범력, 즉 환경권이 피상적인 의미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지에 대해 명시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헌 판결은 현행 법률이 헌법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으면 개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최악의 상태를 고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
질문 2	기후소송 이후 환경계 및 법조계의 평가에 대한 질문 지난 2024년 10월, 기후소송 이후 진행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답변 2	헌법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특히 내년에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감축 목표 설정할 때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을 얘기하는 게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었다.
질문 3	기후위기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기후소송 이후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교육에서의 환경 교육 강화나 기업의 규제 강화 등 같은 요소들 중, 어떤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환경 문제가 여유 있는 선택지라면 상관없지만, 현재 환경 문제는 여유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생계에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런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공교육에서는 환경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는 눈앞의 이익을 좇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렇게 커운 사람이 어른이 되면, 환경보호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 될 수 없으니, 이를 뒤로 미루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임감 내지는 먼 미래의 이익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어야 한다. 혹은 리더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리더도 결국 교육으로 키워내기 때문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문 4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질문 기후소송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 팀의 주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번 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4	본 팀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음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로 넘어간 공은 더 좋은 공동체로 가기 위한 법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일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중심이며 개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 이 관점에서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법과 기후위기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면, 전환금융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실무자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중심으로 배워 온다면, 전환금융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인터뷰이 : 김소희 의원
- 인터뷰 일시 : 2024년 09월 19일 (목)
- 인터뷰 장소 : 서면 인터뷰

1) 인터뷰이 소개

- <https://www.assembly.go.kr/members/22nd/KIMSOHEE>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⁸⁶⁾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⁸⁷⁾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⁸⁸⁾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특별법’의 논의 배경 및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함.
- 또한,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임을 파악함. 기후·금융 분야의 다학제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전환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찰함.

86) “[22021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안정보시스템, 2024.07.2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Z4T0S7R1Z9Y1X4V5E0D5C2I9H8G4, (접속일: 2025.03.10.).

87) “[22023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의안정보시스템, 2024.07.2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K4J0L7K1J9Q1P1O5W5V0S1I3K4Q4, (접속일: 2025.03.10.).

88) “[22059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안정보시스템, 2024.11.2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4T1R1S2A6A1Y0Z5Y9Y2W5X0F3D3&ageFrom=22&ageTo=22, (접속일: 2025.03.10.).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기후금융특별법 법안 발의 배경 및 전환금융에 대한 질문 의원님께서 기후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난 6월, 제안하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⁸⁹⁾ 이후, 지난 7월에는 '전환금융'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본 조달 지원'이라는 점에서 두 법안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셨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답변 1	1호 법안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기후금융 법안은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이나 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책금융을 비롯해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금융이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중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투자가 선행되면, 민간금융도 보다 적극적인 기후금융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후금융 특별법안〉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문 2	전환금융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는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24년인 현재까지 입법 및 시행이 보다 미뤄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2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전환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전환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문 3	기후금융 인재 육성에 대한 질문

	의원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8조 '금융회사의 책무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후금융'에 대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3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금융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도 녹색부문 및 전환 부문에 대한 판단을 위해 K-Taxonomy가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금융지원 대상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K-Taxonomy에서 녹색으로 인정되는 부문을 넘어 '전환'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활동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공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89) "[2205218]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안정보시스템, 2024.11.0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L4J0G9E0F4D0B9C2K7K3J4K9I8I0, (접속일: 2025.03.10.).

5 기후솔루션(SFOC) 기후금융팀

- 인터뷰이 :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 인터뷰 일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6:30
- 인터뷰 장소 : 기후솔루션 사무실

1) 인터뷰이 소개

- <https://forourclimate.org/ko/what-we-do/1>
-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소속 시니어 외국변호사
-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소속 에너지 금융 전문가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기후솔루션이 기존에 추진해 온 활동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환금융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 또한 기후솔루션이 해석하는 전환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환금융 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전환금융 정책이 국제적 기준의 정합성을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의 산업과 금융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5〉 기후솔루션(SFOC) 기후금융팀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기후솔루션은 2016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기후솔루션의 임무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고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확산시키고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솔루션이 구축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의 목표는 석탄에 대한 종합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⁹⁰⁾과 한국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자금 조달을 축소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질문 2	기후위기와 금융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 기후솔루션의 홈페이지에서는 ‘기후솔루션이 하는 일’을 기후금융, 산림, 산업, 석유가스, 전력시장계통, 재생에너지 인허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후금융’을 ‘공공의 압력과 규제 강화를 통해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금융 부문과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잘 대응하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기후소송 이후 개선입법의 과정에서 전환금융을 강조한 정책적 제안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 증가에서 정책 구현으로 이어지는 소개가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까요?
답변 2	기후솔루션은 에너지에 대한 전환금융에 중점을 둔다. 에너지와 화석 연료 부문, 그리고 금융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화석 연료 부문은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금융기관의 투자가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전환'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 부문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석탄 발전 감축 및 화석 연료 투자 철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석탄과 가스 발전소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낮은,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⁹¹⁾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화석 연료 기반 인프라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의 고민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 전환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환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환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환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과 규제, 또는 최소한의 지침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기후금융팀은 기후솔루션 에너지 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투자가 재생에너지로 흐르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대한민국 투자의 흐름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상 금액은 상징적으로 2050만원으로 설정하였다.⁹²⁾ 2022년의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간 눈에 띄는 진전이 없고, 화석 연료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에 기후금융위원회의 업무상 태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소송 측면으로도 각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 3	전환금융의 핵심 요소에 대한 질문 저희는 기후소송 이후 추진해야 하는 개선입법 방향성을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후솔루션이 정의하는 '전환금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더불어, 향후 한국의 전환금융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후솔루션이 진행 혹은 계획하고 있는 연구나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3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환금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환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녹색 채권과 같은 일부 금융 수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체계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녹색 채권은 몇몇 국가에서 전환금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녹색 채권이 LNG 인프라 확대와 같은 전환금융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 사용된 사례가 많으며,⁹³⁾ 이는 전환금융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녹색 채권에서 더 나아가, 탄소 배출권⁹⁴⁾이나 '전환 크레딧(Transition Credit)'⁹⁵⁾과 같은 금융 수단 역시 체계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전환금융의 일환으로 전환 국채를 발행했으나, 이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활용하면서 비판을 받았다.⁹⁶⁾ 이는 단순히 금융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환금융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규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이 효과적인 전환금융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환금융 '메커니즘(Mechanism)'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질문 4	전환금융의 정의에 대한 질문 각 국가와 기관마다 '전환'을 정의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존의 ‘녹색금융’과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모두가 전환금융에 대해 각기 다른 용어나 정의를 가지고 있다. 전환금융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어서, 국가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다. 몇몇 국가는 전환을 위한 자체적인 도구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전환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전환금융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환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모두가 전환금융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금융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전환금융을 보고 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인 ‘공정한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전환금융을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환금융을 정의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질문 5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 평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이번 기후총회는 금융기후총회이며, 금융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국가에게 수여한다’며 우리나라에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RE 100’을 선언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KSSB를 출범하였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자금 420조 원 조성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기후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기후악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	한국은 화석 연료를 여전히 수익성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화석 연료가 여전히 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들은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 악당’으로 보일 수 있다. 전환과 관련된 논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 논의에 참여할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지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이는 우리가 설정한 전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에 누가 참여하고, 참여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이를 촉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세워야 한다.
질문 6	‘공정한 전환’에 대한 질문 저희 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환금융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이미 기후재앙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하고자 합니다. OECD가 발간한 ‘Guidance of Transition Finance’⁹⁷⁾에서도 ‘공정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공정한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6	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은 석탄이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고 들었다.⁹⁸⁾ 석탄화력 발전소 근로자들은 발전소가 폐지되었을 때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내

	에서도 청년층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고령층은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른 새로운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석탄 발전소를 폐지한 지역의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⁹⁹⁾ 우리나라는 지역 내 석탄 혹은 화력 발전소에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고 근로자의 나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전소 폐지 이후 이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전환 크레딧 (Transition Credi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조기 폐쇄를 하겠다는 석탄 발전소에 '크레딧(Credit)'을 주고,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때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

- 90) 사회책임투자의 네 가지 전략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기업경영자와의 직접대화(Shareholder Advocacy), 지역투자(Community Investing) 중 하나로서, 술, 담배, 도박, 핵무기 등 해로운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시키는 환경파괴적인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함. (박정윤, 「기후위기의 대책: 사회책임투자의 이해와 적용」 『행복한 부자연』 10, no. 2, 2021, pp.1-11.).
- 91)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2.6%)은 독일(19.6%), 이탈리아(19.2%), 영국(14.8%), 프랑스(13.6%), 호주(9.8%), 미국(8.4%), 일본(7.8%)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가 아닌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임. (지표누리국가발전지표,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93>, (접속일: 2025.03.10.)).
- 92) 기후솔루션, “국민연금 기후투자 미뤄져 국민 건강과 기금 수익 위험 ‘탈석탄 정책 마련하라’ 이사장 등에 2050만원 손배소“, 2024년 2월 2일 보도자료,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556>, (접속일: 2025.03.10.).
- 93)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위한 녹색채권 조달자금 LNG발전엔 유용한 서부발전…금감원 첫 그린워싱 사례 되나“, 2024년 8월 6일 보도자료,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57> (접속일: 2025.03.10.).
- 94)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맞춰 기업이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함. 배출 허용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음. (박재원, 「투자 트렌드_탄소배출권, 이상고온에 주춤…악재 딛고 반등할까」, 『한경ESG』, 2024.).
- 95)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영자가 발전소 수명이 끝나기 전에 공장을 폐쇄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는 탄소 금융의 한 형태 (“동남아 탈석탄 전략, 전환 크레딧과 ESS 도입 시급”, <Impact On>, 2024.10.0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05>, (접속일: 2025.03.10.)).
- 96) 일본의 GX 경제 이행체는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우려, 해외투자자의 저조한 참여, 미미한 그리니엄(Greenium) 현상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됨. (이보람, 손원주, 「일본의 ‘GX 경제 이행체’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pp.1-16.).
- 97) OECD, 앞의 논문.
- 98) 구준모 외 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 99) 박경원, 이지웅, 앞의 논문.

6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 수석조사역

- 인터뷰이 : 황재학 교수님
- 인터뷰 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21:00
- 인터뷰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1) 인터뷰이 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소속
-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 수석조사역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기후변화가 금융 시장과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탐색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며, 전환금융이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음. 전환금융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6〉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 수석조사역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금융감독원의 ESG 시스템 리스크 분석 팀에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및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감독’의 일반적인 의미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규제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방향을 제시 및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지속가능금융 분야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주도하여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는 등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질문 2	기후리스크 연구 및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질문
답변 2	본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와 최용상 교수님과 공동으로 기후리스크 추정 연구를 진행하신 것과,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탄소중립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는 IMF 회원 기관과 국가의 경제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건전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5-6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 2019년 말, 스트레스 테스트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담당자, 한국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담당자, IMF 담당자가 한자

	리에 모여서 각자의 모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고, 앞으로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전 세계 최초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9년이라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한 셈이다. 2020년도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파일럿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기후과학 전문가와 협업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소속의 교수님과 연구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내에 미래 금융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교육기관인 대학교와 함께 하면 미래에 대한 연구, 인재 육성과도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학과 차원을 넘어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되었다.
질문 3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 평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이번 기후총회는 금융기후총회이며, 금융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국가에게 수여한다'며 우리나라에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RE 100을 선언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KSSB를 출범하였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자금 420조 원 조성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기후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3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 산업은 모든 나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공업의 비중이 특히 높다. 또,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석탄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천연가스 발전 비중도 꽤 높다. 국토가 좁은 데다가 산지도 많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상 탄소 집약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 교토 의정서 체결 이후 OECD에 가입했다. OECD 국가들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비(非)부속서1(non-Annex 1)국가¹⁰⁰로서 감축 '의무'가 아닌 감축 '약속'을 한 국가에 해당되어 있었다.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기 전, UN 기후변화협약이 1990년에 체결면서 이미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억제하는 구조로 변화해갔다. 그러다 보니, 독일과 일본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지속해서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¹⁰¹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였다. 현재에는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 전환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인 것이며,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온실가스의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다. 이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에 대해 선진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과 같은 기후 협약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브릿징(Bridging)'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유사한 경험을 했으면서, 현재는 선진국의 위치에 올라선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선언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탄소 전환 기능이 중요하다.

질문 4	전환금융 시행 사례 비교에 대한 질문 저희 팀의 최종 보고서에 전환금융 정의, 글로벌 동향 보고 및 K-Taxonomy 활용 방안 제안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산업 및 금융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전환금융 시행 사례 중 어느 나라의 사례가 한국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답변 4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한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U-Taxonomy가 있으며, 유럽내에서도 특히 독일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금융을 녹색금융이라고 할 때, 어떤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녹색 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K-Taxonomy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K-Taxonomy는 EU-Taxonomy에 비해 더 엄격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U의 경우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 중 활동 기준을 먼저 충족한 이후, 향후 5년 이내에 나머지 4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전환금융 시행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친환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기준을 일부 완화해 주고, 대신에 그 경로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금융을 '전환금융'이라고 정의하 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식 전환금융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탄소 전환이 필요한 산업이 많다. 이를 위해 철강 산업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녹색이 아닌 산업이 어떻게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논의의 결과로, 해당 기업이 배출량을 당장 '0(Zero)'으로 만드는 건 못하지만, 탄소중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계획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당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전환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일본식 전환금융이다. 우리나라는 K-Taxonomy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과의 차이점이다.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EU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좀 더 편리하지만, 산업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보자면 일본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에서는 일반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서 저탄소 전환이나 기업 정보를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¹⁰²⁾ 와 같은 ESG 공시는 일본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에, '공시 기준'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자본시장의 공시를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K-Taxonomy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기에, EU의 방식과 일본의 방식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EU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정책 당국은 이 두가지 모델 사이에서 어떤 방향이 더 적합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 5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문
답변 5	전환금융을 중앙은행 관점에서 왜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산하에 은행 감독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독립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관되어 있고, EU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 금융 감독 권한이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에 금융 감독 권한이 있다.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자산을 전환금융이나 녹색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 중앙은행의 자산을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에 더해서, 한국은행은 연구 및 조사 기능을 매우 활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다.

-
- 100)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을 의미함. (“기후변화협상”, 외교부, n.d.,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접속일: 2025.03.10.)).
- 101)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09.29., <https://www.gir.go.kr/home/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6&boardId=51&boardMasterId=2&boardCategoryId>, (접속일: 2025.03.10.)).
- 102)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국제기준으로, 2015년 설립되어 2017년 ‘TCFD 권고안’을 발표함. 해당 권고안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4가지 항목(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제시하고 있음. 2022년 기준 S&P 500 상장사의 78%가 TCFD 권고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서는 이 권고안을 기반으로 IFRS S2(기후 공시)를 설계함. TCFD는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IFRS 재단에 이관하며 2023년 10월 공식 활동을 종료함. (“[ESG 용어 1분 해설] TCFD”, 〈한경ESG〉, 2024.06.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74599>, (접속일: 2025.03.10.)).

7 유럽계 대표 A은행 지속가능금융팀

- 인터뷰이 : 유럽계 대표 A은행 지속가능금융팀
- 인터뷰 일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4:00
- 인터뷰 장소 : A은행 사무실

1) 인터뷰이 소개

- 지속가능금융 및 채권 투자/연구/컨설팅 전문가
-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담당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지속가능금융의 시초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과의 인터뷰를 통해, A은행이 전환 금융을 정의하는 방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발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지속가능금융 전략, 국제적 금융기관인 A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특히, A은행만의 포트폴리오 분석 툴을 활용한 녹색 대출, 녹색 채권, 저탄소 전환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AI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파악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1-7〉 유럽계 대표 A은행 지속가능금융팀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의 지속가능금융 전략에 대한 질문 지난해,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 서울지점이 ESG 관련 어워드에서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A은행은 지속가능금융에 적극적인 유럽의 여타 은행에 비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였을 때 A은행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금융 전략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해당 어워드에서 A은행만의 에코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았다. 지속가능금융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은행의 본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 A은행은 은행의 업무가 중 10%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은행 업무의 100%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질문 2	전환금융 정의에 대한 질문 저희 팀은 기존에는 갈색산업에 해당하던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금융을 '전환금융' 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기존의 녹색금융과 구분하고자 하는데요. A은행은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녹색금융은 전환금융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K-Taxonomy에 의해 녹색 자산으로 분류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금융은 아직 '녹색'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업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산업 분류 시의 '전환 부문'과 '전환금융'은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전환'이라는 용어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환'의 정의도 은행마다 다르다.

	국내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몇몇 은행이 자체적으로 전환금융의 정의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전환금융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은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이 애매하다. 전환금융, 녹색금융, 기후금융, 지속가능금융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며, 이들 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일부 겹치기도 한다. 일례로, 또 다른 유럽계 은행인 B은행은 자체적으로 전환금융의 정의를 내렸지만, 그들의 정의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일본의 전환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전환 채권을 발행할 때 해당 채권에 대한 해외 자금이 유입이 제한적이었고 일본 보험사 중심으로 순환되는 모습을 보였다.¹⁰³⁾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용성이 될 것이다. ‘전환금융’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유럽 내의 여러 기관들은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도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용어 정의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환금융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질문 3	K-Taxonomy의 실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질문 독일의 도이치뱅크(Deutsche Bank)¹⁰⁴⁾는 기업 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판단 시 EU Taxonom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한은행 또한 K-Taxonomy와 UNFP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전환금융 자산을 별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계 대표 은행인 A은행은 EU Taxonomy나 K-Taxonomy를 기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및 금융상품 설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유럽계 은행들은 2025년부터 EU Taxonomy에 적합한 대출 비중 공시를 시작한다. 따라서, 은행권 내에서는 EU Taxonomy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은행은 유럽계 은행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추진할 때 EU Taxonomy를 주로 참고하고 있다. 한국의 K-Taxonomy는 EU Taxonomy보다도 서류 준비 및 절차 측면에서 엄격한 측면이 있어 활성화가 덜 된 편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¹⁰⁵⁾에서는 사전 및 사후 인증 모두 요구한다. 전환금융과 K-Taxonomy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증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인증 비용 약 2,000만원 정도를 환급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거래소 상장 비용만 면제해주고 있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질문 4	전환금융 시행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 유럽의 은행들은 한국보다 앞서 전환금융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환금융 도입 사례를 한국에서 적용하거나 벤치마킹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4	1) 자금 조달을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데, 이는 자금 제공자들이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특정 기업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유럽에서 조달한다면, 자금 제공자들은 유럽의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 기업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한국의 규제를 따르게 된다. 2) 전환금융을 산업별로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철강 기업과 거래할 때 전기차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과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예시로, 철강 회사에서 김장 활동을 하는 것은 ESG가 될 수 없다. 반면, 식품 회사가 김치 생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ESG로 볼 수 있다. 철강 회사라면 철강 산업 자체에서 ESG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즉, 각 산업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다.

103) 이보람, 손원주, 앞의 논문.

104) 1870년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한 독일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이자 투자은행.

105) 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2020년 12월 19일 보도자료, <https://www.me.go.kr/home/web/board/>, (접속일: 2025.03.10.).

[부록2] 국외 인터뷰 내용 정리

1 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

- 인터뷰이 :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 the Environment
(이하 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
- 인터뷰 일시 : 2025년 01월 20일 (월) 15:00
- 인터뷰 장소 : LSE Fawcett Hou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1) 인터뷰이 소개

- Joanna Setzer (Associate Professorial Research Fellow)
- Joy Reyes (Policy Officer)
- Catherine Higham (Senior Policy Fellow)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기후변화 거버넌스, 기후소송 관련 연구와 글로벌 기후소송 트렌드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최근 기후소송 동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돕는 도구로서 기후소송이 작동할 수 있음을 파악함.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교육 부문의 개혁 및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춘 대응 방식이 필요성을 인식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2-1〉 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는 약 15년 전,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이후 LSE 산하 연구 센터로 출범되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LSE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인 'TPI(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¹⁰⁶⁾ 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후 관련 법안의 입법과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LSE 내 여러 학과와 협력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교수, 외부에서의 실무 경험을 가진 방문 교수들도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 기업 관계자, 보험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우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질문 2	LSE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가 기후소송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
답변 2	기후변화의 영향을 논의하지 않고 새로운 석탄 광산 건설을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

	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석탄 광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범 확립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소송에 대해 꽤 좁은 정의를 적용했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확장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고 수십억 건에 달하는 모든 사례를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좁은 의미의 정의를 사용할 필요성을 우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소송은 아니지만 ‘정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대기 오염이나 산림 파괴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았고, 이것은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기후’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기후 ‘완화(Mitigation)’를 위한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질문 3	전 세계 기후소송 경향에 대한 질문
답변 3	우리가 관찰한 중요한 추세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정부 정책의 목표나 정부의 행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2015년 이후부터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작해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그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기후 프레임워크 소송이라고 불렀다. 위의 소송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후소송들이 정부의 우선순위, 투자, 그리고 정책 수행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이 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송들은 단순히 1심 승소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거나, 기존 법률 혹은 정부의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기후소송 경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경향은 기후소송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송들을 미래 지향적인 사례와 과거 지향적인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사례의 예시로는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사례가 있다. 이는 법원이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 사례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약 20건 정도 있었으며, 이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다. 과거 지향적인 사례는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직 법원 판결이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러한 소송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입법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 기후변화와 기업 책임에 관한 입법이 필리핀에서 진행 중이다. 필리핀에서는 기업 책임을 다루는 기후 법안, CLIMA(House Bill 9609)가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¹⁰⁷⁾ 이는 필리핀의 기후변화에 관한 청문회 이후 주요 논쟁이었다. 이 법안은 손실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환경 규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슈퍼펀드(SuperFund)’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에,¹⁰⁸⁾ 필리핀이 최초의 사례는 아닐지라도 기후소송 이후 기후 관련 법안으로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질문 4	한국 기후소송 판결에 대한 평가
답변 4	여러분이 한국의 기후소송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공한 기후소송’이라고 한 표현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는 기후소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이 맥락에서 아시아를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기후소송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초점을 둔 특정한 형태의 헌법

	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법원은 유럽 법원들이 채택한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헌법상의 권리를 판단했으며, 이는 더 많은 지역의 기후 소송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헌법상의 권리들이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성공적인 소송이 이후 다양한 유형의 소송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기후소송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기후 대응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장시켰다.
질문 5	기후 정책 혹은 기후 관련 법안 제정을 이끌어 낸 성공적인 기후소송 사례
답변 5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 이후 정부의 기후 목표가 개정된 국가가 실제로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기후소송과 그 판결이 네덜란드 정부의 기후 정책과 기후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야심찬 기후 대응 전략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후소송이 단순한 법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거버넌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기후법이 개정되었으나 소송에 참여한 일부 관련자들이 되려 법을 약화시켰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의 대형 석탄 생산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도 있다. 이들은 석탄 운영 허가가 주어진 합법적 이유와 정부가 석탄 발전소 폐지를 입법화하여 기업 활동을 할 권리를 상실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기후 소송 이후 새로이 마련한 기후 관련 정책 및 법률로 인하여, 대형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후정책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소송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송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역학 중 하나이며, 시민 사회는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기업들은 현상 유지 혹은 현상 유지에서 벗어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들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질문 6	기후소송 제기 시 피고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
답변 6	기후소송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관점이 기후 문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즉, 기후소송에서 어떤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고 선정 시 이러한 초국가적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 위치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영국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영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법적이나 과학적으로는 매우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후소송은 이 피해를 전세계적으로 확장시켜 해석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 또한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전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다’라고 사건 초기에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이 ‘네덜란드’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살펴보고자 결정한 사례이다. 실제로, 델라웨어 주 법원은 델라웨어 주 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다루도록 제한하였다.¹⁰⁹⁾ ‘RWE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페루의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 RWE 사건은 독일 최대 석탄 연소 발전회사인 RWE를 상대로 페루의 한 농부가 제기한 소송인데, 페루의 기후 피해에 대

	한 소송을 독일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¹¹⁰⁾ 이는 어떠한 법 체계 하에서 어떠한 주장을 전개하는 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질문 7	기후위기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기후소송 이후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교육에서의 환경 교육 강화나 기업의 규제 강화 등 같은 요소들 중, 어떤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7	환경, 기후,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공 과정 개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 기후, 지속 가능성들이 다른 모든 전공 과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기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공이라 하더라도, 교과과정이나 특정 강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논의가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법을 공부한다면 특정 계약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다. 회계를 공부한다면 회계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과 기술이 기후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환경 및 기후 재난이 각자의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환경 및 기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정 과정이 존재함과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기후와 환경 파급이 자신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LSE 내에는 ‘Global School of Sustain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있다.¹¹¹⁾ 이는 LSE 내에 ‘학교 안의 학교’를 두어 모든 학과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LSE에서는 모든 학생이 ‘LSE 100’이라는 강좌를 이수해야 하며, 이 강좌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8	기후소송 이후 성공적인 개선입법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질문
답변 8	다른 나라들의 경우 기후변화 소송에 대해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 활동을 구축하고 기후 문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 영국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중요한 우선순위로 평가했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관련 정책 및 법안을 책임지는 책임입안자를 뽑는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어떤 요인이 본인의 투표 결정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후변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은 급여를 받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적었다. 이를 통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수록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은 사실이며, 유럽에서는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어왔다.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일부는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있고, 일부는 각국의 특정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모든 논의 결과를 좌우한다. 즉, 초당파적인 기후위기 문제가 당파적 논의에 불과해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유권자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탈성장(Degrowth)’과 연결시키면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야 성장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이 하나의 기회로 인식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투자 기회와 이를 통한 수익,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투자가 석유 및 가스 산업 투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스턴 보고서(Stern Review)>의 저자 Nickolas Stern 과 같은 전문가들 또한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좋은 사업(Good Business)’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적 대립 또는 성장 대 탈성장 식으로 양극화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식의 논의는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논의에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106) [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107)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mmending HB No. 9609 that seeks to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addressing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he country”, 2024년 8월 21일 보도자료, <https://chr.gov.ph/statement-of-the-commission-on-human-rights-commending-hb-no-9609-that-seeks-to-establish-institutional-mechanisms-addressing-adverse-effects-of-climate-change-in-the-country/>, (접속일: 2025.03.10.).

108) EPA, “What is Superfund?”, EPA, 2024.10.08., <https://www.epa.gov/superfund/what-superfund>, (접속일: 2025.03.10.).

109) Setzer J, Higham C, 앞의 글, pp.31.

110)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s, “Luciano Lliuya v. RWE AG”,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s, n.d, <https://climatecasechart.com/non-us-case/liuya-v-rwe-ag/>, (접속일: 2025.03.10.).

111) [LSE Global School of Sustainability](#).

2 ITPN (International Transition Finance Network)

- 인터뷰이 : Kate Ryan
- 인터뷰 일시 : 2025년 01월 20일 (월) 10:00
- 인터뷰 장소 : IITPN London Office

1) 인터뷰이 소개

- <https://itpn.global/>
- <https://www.e3g.org/>
- Strategic Partnerships Manager of ITPN
- Senior Policy Advisor of E3G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ITPN이 추진하는 기후 금융 정책과 전환 계획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며, 전환금융의 발전 과정과 그 역할을 논의함. 이를 통해, ITPN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환 계획을 논의 및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주요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파악함. 민간 부문의 전환 계획을 국가 정책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 또한 파악함.
- 인터뷰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전환금융 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적 기준과 연계된 효과적인 전환금융 전략에 대해 모색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2-2〉 ITPN 전환 계획 정책 고문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몇 년 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¹¹²⁾에서, 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전환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1년 당시에는 전환 계획이 새로운 개념이었기에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 이하 TPT)’를 구성하여 전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전환금융 및 전환 계획 공시 지침을 제작하기 위해 TPT가 구성되었고, E3G는 TPT의 운영을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였다. E3G는 영국의 녹색금융 및 투자 센터(CGFI, UK Center for Greening Finance and Investment)와도 협업하고 있다. E3G는 TPT 운영에 약 2년 간 참여하였고,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등을 만들었다. 2024년, TPT는 성공적으로 해산되었으며, 초기에 수립했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소속된 IFRS 재단이 TPT의 공시와 관련된 책임을 맡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TPT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인 성과였다. 이 결정은 TPT의 작업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으

	며, 각 전환 계획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PT에 소속되어 있던 팀원들은 E3G와 ‘국제전환계획네트워크(International Transition Plan Network, 이하 ITPN)’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E3G는 기후변화의 정치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기후변화 싱크탱크이다. 일종의 본사인 런던 사무소 외에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 각지의 정치·경제 중심지에 사무실이 있다. E3G 재무팀은 영국이나 EU 내의 전환금융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 팀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 규제, 거시 경제, 그리고 그것이 기후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국제 팀도 있다. 이 외에도 공공 은행과 개발, 금융개발과 관련된 팀, 혹은 UNFC와 같은 국제 협력 지원에 중점을 둔 팀, 에너지 팀, 정치 경제 지도(PEMM) 제작 팀 등이 있다. E3G는 기후 안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선 활동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전환금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EU 내 각국의 재무부 혹은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넘어 다 함께 모여서 전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전환 계획이 국제적 표준과 시장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실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서 ITPN 설립을 발표하였다.¹¹³⁾ ITPN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전환 계획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후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가 전환 계획 요구사항이나 법률, 지침을 살펴볼 때 서로 합의된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서로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서로 다른 상황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환 계획은 기업이 전환을 진행하고, 전환금융을 확보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들이 실현되려면 모든 사람이 전환 계획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질문 2	전환과 전환금융, 전환 계획 정의에 대한 질문 각 국가와 기관마다 ‘전환’을 정의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PN은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답변 2	ITPN은 ‘기후회복력¹¹⁴⁾이 있는 경제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TPT와 ITPN가 전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단순히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과 적응(Adaptation)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출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온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 전환 계획은 완화(Mitigation)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ITPN은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모두 고려한다. ITPN 내에서는 전환금융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하는 금융 흐름이나 제품 및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범주를 전환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3	전환 계획에서 전환금융의 역할
답변 3	전환 계획이 전환금융에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전환 활동을 위한 금융을 제공한다는 것, 즉 전환금융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전환 계획이 중요한 도구인 이유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 계획은 전환금융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 전환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그린워싱 방지, 전환금융 지원, 투자 활동 등을 도울 수 있다. 더불어, 전환 계획은 보험 언더라이터(Underwriter)¹¹⁵⁾나 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고객의 사업을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환 계획은 전환금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전환 계획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모든 전환 계획이 전환금융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전환금융 시행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립된 전환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 계획이 전환금융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전환금융에 대한 모멘텀(Momentum)이 커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ISSB 기준에 맞춘 공시나 자체적인 전환 계획 관련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 계획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환금융을 지원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답변을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질문 4	전환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전략
답변 4	ITPN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원만한 접근 방식(Strategic and Rounded Approach)'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전환 계획에 대한 전략과 제한된 접근 방식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탈탄소화'에 대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scope1, 2, 3가 포함된다.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운영상의 배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배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고려한다. 두 번째는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리스크와 기회도 포함된다. 세 번째는 경제 전반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제 전반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즉, 기업은 '전환'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특정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자사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감축량이 더 크다면, 이 활동은 경제 전반의 전환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면서 자사의 배출량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이는 경제 전반의 전환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판단한다.
질문 5	전환금융의 필요성 및 중요성
답변 5	전환금융은 현재와 미래라는 두 시점 사이의 큰 격차를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녹색금융과 같이 저탄소에 이미 달성한 경제 활동에 집중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도구나 개념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질서 있는 전환(Orderly Transition)'을 가능하게 한다. 전환은 단순히 속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혼란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포함한다. 따라서, 전환금융은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성숙도(Maturity)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환금융이 없다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질문 6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혹은 전환금융 시행 시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6	전환금융은 매우 복잡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해당 활동이 전환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로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한 전환 계획 공개가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계획을 공개하고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변화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초기의 전환 계획과 비교하며,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7	전환금융과 녹색금융의 차이점
답변 7	전환금융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환금융의 경우 녹색금융에 비해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색금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명확히 아는 데 비해, '전환금융'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질문 8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신다면, 전환금융과 EU Taxonomy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8	각 국가나 기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환 관련 도구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U는 EU Taxonomy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EU Taxonomy를 활용해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환 계획에서 EU Taxonomy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경제 활동을 설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ITPN은 TPT에 이어 중요 전환 계획(Critical Transition Plan)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3A’이라고 부른다. 이 프레임은 야망(Ambition)¹¹⁶⁾, 행동(Action)¹¹⁷⁾, 책임감(Accountability)¹¹⁸⁾을 의미한다. 전환 계획 내에서 회사 전체의 목표, 현재의 방향성, 비즈니스 전략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한다. 이후, 공개한 행동은 제품 및 서비스의 변화나 비즈니스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그리고 참여 전략과 같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투자 포트폴리오 등이 전환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ESG투자 등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하는 방식, 직원 재교육 계획, 기업 문화 및 기후 목표와 연결된 급여 지급 및 보상 방식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EU Taxonomy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특정 기업이 자신의 ESG투자 포트폴리오를 x퍼센트에서 y퍼센트로 늘리겠다고 설정한 경우 포트폴리오의 세부 내용이 EU Taxonomy 내의 활동과 일치한다고 보고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즉, EU Taxonomy는 전환 계획 내의 목표를 정렬하는 방식 내지는 도구처럼 사용된다.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EU Taxonomy는 전환 계획 전환 계획 실행, 매트릭스(Matrix)¹¹⁹⁾ 및 목표 설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EU Taxonomy와 전환 계획은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영국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UK GREEN Taxonomy¹²⁰⁾를 개발해 왔고, ITPN 또한 UK GREEN Taxonomy에 대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향후 몇 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9	ITPN의 최종 목표
답변 9	TPT는 공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산업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명확한 작업을 하였고, ITPN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 TPT의 작업에 비해서는 덜 명확한 부분도 존재한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기 위해 우리의 네트워크를 도입하였고,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 부문은 지속가능금융이나 전환금융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를 포함하며, 금융 규제 기관인 영국 금융감독청(FSA, Finance Service Authority)이나 일본 금융감독원, 중앙은행,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을 포함한다. 기존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논의의 장이 존재한다. 녹색금융 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¹²¹⁾와 같이 서로 협력하는 중앙은행들의 모임에는 금융 규제 당국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보다 다양한 담당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공식적인 모임 또한 여럿 존재한다. 현재 약 20개 국가가 전환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훨씬 낮았다. 이는 정부와 시장 모두에서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관심을 진전시켜 새로운 협력과 협의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전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112) 외교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2021년 11월 14일 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81, (접속일: 2025.03.10.).

113) ITPN, “ITPN launches at COP29 to drive global collaboration on transition plans”, ITPN, n.d., <https://itpn.global/itpn-launches-at-cop29-to-drive-global-collaboration-on-transition-plans/>, (접속일: 2025.03.10.).

114) 사람이나 생태계가 특정 기후위기와 위험, 스트레스 등을 감당할수있는 능력 즉 기후위험으로부터 회복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 설명

하는 개념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2024년 4월 4일 보도자료, https://www.kdca.go.kr/filepath/boardDownload.es?bid=0015&list_no=724946&seq=2, (접속일: 2025.03.10.)).

- 115)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소득, 건강상태, 가입목적 등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의 정도에 맞는 보장
의 한도를 제한하고 보험가입의 최종 승인 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 내의 직무.
- 116) 전환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왜 이러한 전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포함됨. 비즈
니스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후변화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117) 야망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 118) 전환 계획이 어떻게 관리되고 모니터링될 것인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부분으로, 기업이 목표 달
성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적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 119)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의미함.
- 120) [UK Green Taxonomy](#).
- 121)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기후변화와 환경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 기구. ([N](#)
[GFS](#))

3 TFMR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 저자

- 인터뷰이 : Vanessa Havard-williams
- 인터뷰 일시 : 2025년 01월 21일 (화) 15:00
- 인터뷰 장소 : Linklaters London Office

1) 인터뷰이 소개

- <https://sustainablefutures.linklaters.com/post/102jm4f/transition-finance-market-review-provides-blueprint-for-unlocking-transition-finance>
- (전) 법무법인 Linklaters의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 공동 책임자
- (전) 영국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TPT, Transition Plan Taskforce)' 회원
- (현) 영국 재무부, 에너지 안보부, 탄소중립부의 의뢰하고 런던시 법인이 주관한 '전환금융 시장 검토 보고서(TFMR,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¹²²⁾의 단독 저자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약 200년 역사의 다국적 법무법인 Linklaters의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 (전)공동 책임 변호사로서, 영국 내 지속가능금융 및 환경법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인터뷰이와 TFMR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영국의 전환금융 등장 배경 및 논의 현황에 대해 파악함.
- 본 인터뷰를 통하여, 전환금융 도입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대한민국에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었음.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2-3〉 TFMR 저자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전환금융 정의에 대한 질문 각 국가와 기관마다 '전환'을 정의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MR에서는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답변 1	우리는 정의에 앞서, 정확한 근거(Evidence)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모두가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TFMR은 보다 넓은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이하 GFANZ)' ¹²³⁾ 의 '네 가지 범주(Four Buckets)'를 참고하였다. 이 네 가지 범주는 TFMR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참고하고 있다.

122)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 provides blueprint for unlocking transition finance in the UK and globally.](https://sustainablefutures.linklaters.com/post/102jm4f/transition-finance-market-review-provides-blueprint-for-unlocking-transition-finance)

	그러나, 해당 범주가 유일하게 언급된 것은 아니며 EU Taxonomy나 ICMA의 기준을 언급한 이들도 있었으나, 우리가 GFANZ의 범주를 택한 이유는 균형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성을 위한 보조장치(Guardrails as to Credibility)'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TFMR의 1장을 확인해보면, 정의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자가 점검을 위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은 본인의 활동 중 어떤 활동이 파리 협정 내용에 걸맞는 진정한 전환 활동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전환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TFMR은 영국 관점에서 작성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아마 호주에서 이를 참고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TFMR을 읽으며 '한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 2	전환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2	전환금융이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배출 부문의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부문별 배출 감축 목표나 지속가능금융 목표와 같은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전환을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정의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지원하는 데 전환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금융 기관들이 상업적 구조(Commercial Construct)에 맞춰 창출한 개념이다. 효과적인 실물 경제 정책과 인센티브가 있다면 전환금융의 정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실물 경제 환경이 전환을 위한 자금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금융 환경과 그린워싱 문제 등으로 인해 전환금융을 정의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전환금융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며 검증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비판 또한 일부 존재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측정 및 평가하려면 해당 기준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 3	TFMR 작성 과정에 대한 질문
답변 3	어떻게 시스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어렵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러한 조직 문화,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분야에서 항상,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TFMR을 발간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TFMR의 2장 중 '국가 전환 계획' 작성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촉매 자본(catalytic capital)과 결합하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실물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더 잘 설명해야했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책들이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완전히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각 산업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내에서 NDC를 수립하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서는 모든 중공업들을 묶어 단일한 사업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철강은 시멘트나 유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산업을 더 세분화 한 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하향식 접근(top-down)과 상향식 접근(bottom-up)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국가별 산업 경로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각 국가는 출발점과 경제 발전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구분뿐만 아니라 국가별 산업 경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 경로를 설정할 때 산업별 및 금융 업계의 의견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Policy Package)'를 개발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전환금융에서 '병목 현상(bottlenecks)'¹²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정책을 개발한 이후 시장이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탄소중립 위원회(Net Zero Council)’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국가 투자 전환 계획(National Investment Transition Plan)’을 제안했다. 해당 계획은 국가의 전환 계획이 구체화된 형태로 투자와 금융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쳐 국가 채권 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NDC와 산업 부문 경로를 재검토하면서 보다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NDC와 산업 경로의 정부 정책이 ‘그린 gilt(Green Gilt)’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더 일관성 있는 시장 제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늦게 논의되어, TFMR에 담지 못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전환을 이야기할 때, 전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요한 배출 감축 활동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의 생각보다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이를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전환 활동으로는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녹색에서 분리하여 배출 감축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긍정적인 내용은, 영국 정부는 TFMR의 내용에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다음 달 10일에 ‘전환금융 위원회(Transition Finance Council)’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에 의장 투표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이는 영국 전환금융 시장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4	전환금융이 집중해야 할 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 감축이 어렵고(Hard to Abate),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High Emitting) 산업에 초점을 맞춰 전환금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4	고탄소 배출 산업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논의하던 도중, 초기에는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고탄소 배출(High Emitting)’로 수정하였다. 감축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곧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전환이 필요한 분야들이 많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의외로 많지만, 부동산과 같은 분야는 기술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감축이 어려운 부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명백히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이는 농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요 산업 외에도 여러 산업 부문들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산업에 동시에 접근한 후, 고탄소 배출 산업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질문 5	전환금융 시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5	이는 어려운 문제다. 개별 거래나 기업 전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각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는지, 이를 위한 단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과거에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었는지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전환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국은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설정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법으로 제정하고, 탄소 예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기후변화 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와 같은 논의 기구를 출범하였다. 탄소 예산을 통해서는 정부가 탄소 예산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독립적인 법정 위원회인 ‘기후변화 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는 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대체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서 너무 형편없다.’ 등의 직설적인

	평가가 담겨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정부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 정부의 임기는 짧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 정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부의 지원 및 규제 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법과 금융기관의 운영 방식, 법률 및 수탁 의무 등 모든 것이 과거 화석 연료 중심의 세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환경 및 사회적 문제들과 충돌하고 있는 현재, 기존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외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만 자금을 투입한다. 투자 가치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실물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변화해야 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시장의 피드백을 받은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다.
질문 6	영국이 전환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
답변 6	영국은 세계 최고의 보험 시장, 외환 시장, 자본 시장 그리고 금융 서비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허브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금융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전환금융을 도입한 이유 또한 전환금융 시장의 선도자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영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문은 금융 서비스이고 이는 영국의 수출 측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금융 부문은 철강, 시멘트 등 고배출 산업에 비해 전환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전환금융을 도입하였다. 전환금융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들의 전환에 영국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영국 스스로 전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영국이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허브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 중 가장 큰 부문은 금융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인데, 이는 수출 측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환금융 자금을 조달하는 경제적 허브로서의 영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은 스스로 설정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있으며, 실물 경제에서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지속가능한 금융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런던으로 모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전환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갖추고, 이를 연결하는 계획과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각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지속가능금융 시장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도자(First Mover, Early Mover)'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환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범 사업 구조를 마련하여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및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랑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환금융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은 영국 외에도 많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환금융에 대해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전환금융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영국만의 '시간대(Time Zone)', '원재료(Source)'를 가지고 있다. 유럽은 사람들이 '조금 불만을 품는(a little bit grumpy)' 복잡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EU, 싱가포르, 두바이,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TFMR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많은 부분이 신흥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후위기 해결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영국은 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전환금융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갖춘다면 이러한 신흥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질문 7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혹은 각 기관이 전환금융 시행 시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7	이는 실물 경제 정책과 인센티브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해 경제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자산 계층이나 금융 상품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 금융 상품을 보지 않는 이유는, 산업별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TFMR의 4장에서는 라벨링된(labeled) 채권과 대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녹색 채권 및 여신 시장은 한동안 잘 작동했지만, 현재는 녹색 프리미엄이 없거나 유의미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질문이 많아지고, 비용이 높아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영국 내 기업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녹색 채권 발행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재정적 혜택이 크지 않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진 큰 문제로, 녹색 프리미엄의 부족은 금리의 움직임과 관련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전환은 아직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크지 않다. 따라서, 전환금융 교육의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고, 영국은 '혼합 금융(Blended Finance)'의 선례를 만들고자 했다. 전환금융 연구소에 보조금과 공공 금융과 민간 금융을 혼합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이러한 혼합 금융 사례를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보조금을 신용 시장과 기술에 집중하고, 공공 금융기관은 개발 금융기관, 국가 인프라 펀드, 수출 신용 기관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로 혼합 비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후 문제 해결 방안이나 활동은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금융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모델(Sandwich Model)'이 필요하다. 클럽 샌드위치(세 조각의 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떠올리면 쉽다. 맨 아래 층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있고, 그 위에는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뢰(Credibility)'와 '안정감(Comfort)'을 주는 공적 자금이 있어야 민간 금융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야 하지만, 초기 모델은 복잡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질문 8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신다면, 전환금융과 EU Taxonomy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8	EU Taxonomy는 전환금융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환금융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전환금융의 필수 요소는 '전환 계획(Transition Plan)'이며, 실물 경제 정책과 '국가 전환 계획(National Transition Plan)'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영국 또한 Taxonomy 개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수요가 크지 않다. '녹색금융 연구소(GFI, Green Finance Institute)'의 주도 하에 영국의 Green Taxonomy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이 작업은 2-3년 전쯤에 이루어졌고, 이전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EU Taxonomy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1) 첫 번째 문제는 EU Taxonomy의 복잡성이다. 2) 또 다른 문제는 Taxonomy를 작성한 방식이 'EU의 방식 안(EU Bubble)'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특정 경제 활동이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DNSH, Do No Significant Harm)'고 정의할 때 EU의 법률을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따라서 EU가 아닌 신용 시장에 Taxonomy를 적용하는 것은 꽤 어려울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률을 따른다. 즉, EU Taxonomy가 EU 내에서만 토의된 후 만들어져, 신용 시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세 번째 문제는 EU Taxonomy에 없는 활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EU Taxonomy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정보 공시 정도(Disclosure)’가 매우 낮은 것으로 표시되고, 이분법적 시스템에 따라 해당 경제 활동은 ‘Dark Green’으로 분류된다. 반면, 싱가포르 Taxonomy의 신호등 시스템은 EU Taxonomy 보다 더 유연하고 범위가 넓다. 4) 마지막 문제는 은행들이 녹색 자산 비율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녹색 자산 비율이 유용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Taxonomy는 여전히 유용하다. 최초로 제작된 EU Taxonomy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EU Taxonomy에 대한 다양한 충고와 비판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추후 발표될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¹²⁵⁾를 통해 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질문 9	기업이 마주한 전환금융 도입 과제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
답변 9	기업들은 금융 전환(Financial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특정 기업 차원에서 전환이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기업이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조직의 전환 전략과 관련하여 기업이 편안하다고 여기는 미래 지향적인 지표들은 무엇인지, 기업 단위의 금융 지원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전환금융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제대로 된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TFMR의 4장에서 전환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전환 계획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도구들 또한 다루었다. 예를 들어, 신뢰성 있는 프레임워크는 무엇인지, 전환 계획에 평가 등급이 필요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민된 뒤 전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FMR은 중소기업에 대한 권고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조금 더 밀어 붙이려고 한다(push it a bit)’. TFMR 외에도 중소기업의 전환금융에 관한 보고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주 초에는 ‘Perseus Project’라는 보고서가 공개되었다.¹²⁶⁾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표준화 된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개발 중인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는 유럽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3D)’ 및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통해 대기업의 공급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식과 연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Project Perseus’가 제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미리 작성하여 기업들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Pre-Populat)’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 목적의 표준화 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대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요구받는 지속가능성 보고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0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위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 금융기관은 산업계, 민간 금융 및 투자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답변 10	기존의 화석 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이들은 현재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TFMR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부문별 경로 설정에서의 민관 협력, 그리고 혼합 금융 솔루션 개발에서의 민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만일 이러한 민관 협력이 없다면 적절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 탄생한다. 정책 수립 이후 해당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다시 수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했던 것처럼, 관련 당사자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병목 현상 해산(Debottlenecking)’이라고 부른다.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마찰을 제거하는 것(Friction Out)’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업무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협력은 매우 어렵다. 이는 정부 간 업무를 넘나들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핵심 권한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규제 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통화 정책 자문 활동에 통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TFMR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란은행과 영국 금융감독청(FSA, Finance Service Authority) 모두와의 논의를 거쳐 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TFMR에서 지적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환을 기존의 녹색금융처럼 그들의 책무, 역량,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전문성 내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 관련 신중한 사안 원칙 문서¹²⁷⁾를 다시 발행했으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상당히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특정 부문에 대한 ‘노출(Exposure)’을 줄이도록 각 은행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잔소리하듯(Nagging)’ 요구하자 일부 은행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결론은, 중앙은행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무엇이 적절한 조치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민관협력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 중 하나는 규제 기관이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기간(Temrs)’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규제 당국과 ‘피규제 기관(Regulated Entities)’이 어려운 문제나 ‘경계선(Line)’에 대해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안전한 논의(Save Conversation)’를 위한 ‘샌드박스(Sandbox)’ 개념을 말한 적이 있으며 규제 당국과 피규제 기관 모두 아직은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위험 회피적(Risk-Averse)’ 태도를 취하기 쉽다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규제 승인(Regulatory Approval)’ 구조를 마련하더라도, 규제 기관이 결정 내리기를 꺼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질문 11	전환금융과 법의 연관성
답변 11	소송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Guardrails)’을 중심으로 재정 전환이 필요한 고배출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송의 위험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지만, 소송은 재정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감시하는 ‘작동 기제(Mechanism)’ 중 하나이다. 이를 전환적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화석 연료 생산 부문에 더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규제, 권리 그리고 인센티브가 법과 규정 속에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가이드 북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TFMR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123)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2021년 설립된 금융 연합체. GFANZ 회원사들은 UNFCCC의 이니셔티브인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 과학 기반 지침 등을 준수해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을 위한 목표를 5년마다 점검하며 매년 진행 상황과 배출량을 보고해야 함. 특히, 금융 부문 의사결정 시 ‘기후변화’를 핵심 의제로 두고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을 탄소감축 위주로 운영해야 함. (“넷제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기후금융’”, 〈한경ESG〉, 2021.1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305642i>. (접속일: 2025.03.10.)).

124) 자금의 흐름이 지연되거나 막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상황. 즉,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특정한 금융기관이나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금융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를 의미함.

125) [Omnibus Package](#).

126) [Perseus Project](#).

127) [Prudential Regulation](#).

4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 인터뷰이 : Guan Schelleken
- 인터뷰 일시 : 2025년 01월 23일 (목) 11:30
- 인터뷰 장소 : Eurotower

1) 인터뷰이 소개

- Director of Climate Risk Team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유럽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전환과 전환금융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아울러 유럽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식에 대한 실무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전환금융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은행 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탐색함.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2-4〉 유럽중앙은행(ECB) 기후리스크팀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가별로 운영되었던 감독 체계 대신 국경을 넘어선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은 21개국 회원국의 은행을 직접 감독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내 110개 대형 은행을 직접 감독하고 있으며, SSM(Single Supervisory Mechanism)¹²⁸⁾ 포트폴리오에는 50개의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LSI(Less Significant Institutions)¹²⁹⁾라고 불리는 중소형 은행도 감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 감독팀(Joint Supervisory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팀에는 유럽중앙은행(ECB) 내 인원 6명과 각국의 금융 감독 당국 이사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기후리스크팀의 주요 업무는 기후 리스크를 유럽중앙은행(ECB) 업무에 통합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관리국(Project Management Office)'이라고도 불린다. 약 110여개의 팀과 협력해야 하는 만큼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계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
질문 2	유럽중앙은행(ECB)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2	유럽 여러 국가에 걸친 정책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전환과 관련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EU 전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여러 국가와 여러 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의 기후 및 환경 리스크에 관한 가이드(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¹³⁰⁾는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EU 전반을 일관되게 관리 감독하는 업무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EU 전반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과 주요 업무의 핵심이다. 감독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전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더 잘하고 있는지 비교하기보다, 각 은행의 유형에 따라 전환 과정을 비교 및 평가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초국적 은행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에 본사가 있다. 이 은행들은 여러 나라에 많은 지사가 있지만, 유사한 사업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에 비교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비교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법률이 있어 언제나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의 기후 및 환경 리스크에 관한 가이드(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를 발표하며 기후 리스크 감독 업무를 시작하였다. 해당 문서는 은행의 전략,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 관리, 위험성향(Risk Appetite)¹³¹⁾, 공시 기준 등 다양한 은행 업무 영역에서 기후 및 환경 위험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기존의 법률 해석하는 방식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각 은행의 기후 리스크 관리 달성률이 10%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ECB)은 각 은행에 ‘자가 평가(Self-Assessment)’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부족한 점과 개선 방안 제출을 요청하였다. 또한, 계획 제출 1년 후 ‘전체 감독 검토(Full Supervisory Review)’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며 은행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압박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의 기후 및 환경 리스크에 관한 가이드(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은 각 은행이 이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어, 은행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 평가를 하지 않거나 기후 리스크를 은행의 기존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일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하였다. 2022년에는 약 25조 유로 규모, 18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후 감독¹³²⁾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 하에 있는 모든 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여 2023년부터 2024년, 약 2년 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앞서 언급한 벌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유럽중앙은행(ECB)은 각 은행들이 기후 및 환경 리스크 관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문 3	전환금융의 정의에 대한 질문 각 국가와 기관마다 ‘전환’을 정의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CB는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존의 ‘녹색금융’과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유럽중앙은행(ECB)은 전환과 전환금융을 정의하지 않았다. 전환금융에 대한 내용은 유럽집행위원회¹³³⁾에서 담당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 감독 당국으로서 ‘전환 리스크’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전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환 리스크’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전환의 최종 상태에 대해 고민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 경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EU의 지속가능한 경제와 이에 기여하는 전환을 위하여 EU Taxonomy,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같은 다양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다. EU Taxonomy 내의 발전 분야의 경우, 발전량 대비 탄소 배출이 특정 수치 이하이면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분류한다.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는 전력 발전업체는 고탄소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¹³⁴⁾나 유럽 공동 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¹³⁵⁾ 등은 전환을 탈탄소화 경로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종 상태, 즉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인 방식을 택할지는 유동적이다. 우리는 이를 모델링할 수 있고, 국가별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각국의 전기 요금, 정책, 기술 등을 살펴본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각 은행들은 실물 경제의 자금 조달자로서 전환금융 및 시행 지침을 정의하기 위해 EU Taxonomy를 종종 활용하였다. 전환금융이란 이미 친환경인 것이 아니라, 친환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경로는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의 기후 및 환경 리스크에 관한 가이드(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에서는 은행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공통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거나 각 기관의 정의를 기반으로 전환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통 기준과의 차이를 수치로 보고하도록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은행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은행들이 전환을 진행 중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
질문 4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혹은 전환금융 시행 시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4	미국은 주로 자본시장(주식, 채권)을 통해 자금이 유입되지만, EU는 은행을 통해 많은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EU는 은행 중심의 경제이다. 그러나 EU 내 대부분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은 매우 탄소 집약적이다. 은행 이자 수입의 약 60%가 탄소 집약적인 사업에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 집약적인 사업에 대한 대출을 당장 중단하고 녹색금융만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비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녹색금융의 대상이 아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위한 자금, 즉 전환금융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발전소 특성 상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즈니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전환금융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탄소 집약적 산업의 전환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에 은행의 역할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은행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그린워싱 또한 고민해야 한다. 은행의 금융 상품 혹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거나 전환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개별 은행 및 은행 업계에 그린워싱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 부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려는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EU Taxonomy가 그 중 하나이다. EU Taxonomy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U Taxonomy의 정의를 충족해야만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안정성 위험에 대한 예시로, 차량 대여 회사인 ‘허츠(Hertz)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허츠(Hertz)는 기업 전환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전기차를 대량으로 구입하였으나, 충전소 부족이나 비싼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 많았다. 허츠(Hertz)는 큰 손실을 입었고, 이미 구매한 전기차는 낮은 가격에 되팔아야 했다.¹³⁶⁾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은 전환의 최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전환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5	EU Taxonomy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신다면, 전환금융과 EU Taxonomy 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	언제, 무엇을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어려운 질문이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강철이 필요하고, 그 강철은 전 세계에서 운송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녹색경제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cut off)'을 그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기술적인 논의이다. 앞선 사례는 전력 부문에 대한 간단한 예시이지만,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분야의 경우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금융 시행 시 기업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EU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은행이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전체 공시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¹³⁷⁾ 이는 EU Taxonomy 그 자체뿐만 아니라 EU Taxonomy를 사용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매우 중요한 노력이다. 이 단순화는 EU Taxonomy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EU Taxonomy의 핵심 부분을 보존함과 동시에 EU Taxonomy의 어느 부분을 더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에게는 EU Taxonomy가 요구하는 내용이 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EU Taxonomy를 조정하거나, 전환이 필요한 자산 및 산업 특성에 집중하여 EU Taxonomy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 6	민관 협력을 통한 전환금융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위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 금융 기관은 산업계, 민간 금융 및 투자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답변 6	우리는 유럽 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¹³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¹³⁹⁾와도 협력하고 있다. 'Global Standards Center for Banking Supervision'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많은 미국 은행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 유럽 은행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은행들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감독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녹색금융 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와 같은 자발적 네트워크가 있고, 유럽은행연맹(EBF, European Banking Federation)¹⁴⁰⁾과도 연 3회 정도 함께 모여 기후리스크에 관하여 논의 한다. 또한, 다양한 공청회(Consultations)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최대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들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128) ECB의 감독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중앙은행, 회원국, 국가 감독 당국으로 구성됨. (“〈사사금융용어〉 유로존 단일 은행 감독 기구(SSM)”, 〈연합인포맥스〉, 2012.10.2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90>, (접속일: 2025.03.10.)).

129) 자산 규모가 300억 유로 이하인 중소형 은행을 의미함. (“Organisation of supervision and oversight for less significant institutions”, ECB Banking Supervision, n.d.,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framework/lsi/organisation/html/index.en.html#what>, (접속일: 2025.03.10.)).

130) ECB,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 2020.11. (해당 보고서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열람은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ECB, “ECB publishes final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 2020년 11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press/pr/date/2020/html/ssm.pr201127-5642b6e68d.en.html>, (접속일: 2025.03.10.)).

131) 위험감수성향. 위험성향이라고도 부르는 'Risk Appetite'에 대하여, 유럽중앙은행(ECB)은 '잠재적인 이익 창출을 기대하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라고 정의함. (ECB, “ECB Financial Stability Review”, 2007.05.11., p.166.).

132) 대형은행 107곳, 중소형은행 79곳 (ECB, “Thematic Review on Climate and Environmental Risks 2022”, 2022.11.02., p.4.).

133) 유럽연합(EU)의 행정부로, 정책 제안, 법 집행, 예산 관리, 및 EU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 ([European Commission](https://european-council.europa.eu/media/en/press-communications/2019/11/Pages/19191103.aspx)).

134) 제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에 OECD 회원국들이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공급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산유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 OPEC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석유소비국이 결성한 기구로서,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에너지정책 포럼, 에너지기술 연구협력체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IEA).

135) 유럽연합의 과학 및 기술 지원 기관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연구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구. (Joint Research Centre).

136) “천슬라’ 일등공신 美렌터카 허츠, 테슬라 2만대 되판 이유”, <이데일리>, 2024.1.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2806638757064>, (접속일: 2025.03.10.).

137) 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Simplifying the EU Taxonomy to Foster Sustainable Finance](#)”, 2025.02.05.

138) EU 내의 은행을 위한 단일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기관. (EBA).

139) BCBS는 은행 규제, 감독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1974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BCBS는 주로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발표한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아울러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시장리스크 측정 체계 및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규제 방안도 논의하고 전세계적으로 은행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음. (BCBS).

140) 유럽 내 33개 국가 은행 협회의 연맹으로, EU 내 약 3,500개 은행을 대표하는 기관 (EBF).

5 독일은행협회 (BDB, Bankenverband)

- 인터뷰이 : Tostern Jäger, Adrian Schwantes
- 인터뷰 일시 : 2025년 01월 23일 (목) 15:00
- 인터뷰 장소 : 비대면 인터뷰

1) 인터뷰이 소개

- [Torsten Jäger, Bankenverband, Considerations for an EU framework for Transition Finance](#)
- Tostern Jäger (Head of Bankenverband Sustainable Finance)
- Adrian Schwantes (Associate Director of Bankenverband Sustainable Finance)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본 인터뷰를 통해 독일 금융권에서 전환금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함.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중기·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 및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닌 독일과 한국이 전환금융 시행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함.
- 특히,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의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에서 전환금융 시행 시 K-Taxonomy를 활용할 경우 마주할 수 있는 도전과제 등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음.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2-5〉 독일은행협회(BDB) 지속가능금융팀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독일은행협회(BDB)는 독일 내 주요 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소규모 기관이나 일부 외국 은행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재 약 159개의 회원과 다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행협회(BDB)는 초안 단계의 금융 규제가 법제화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독일은행협회(BDB)의 회원사들이 금융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 은행 협회의 전략적 '시장 입지 선정(Positioning)'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질문 2	독일은행협회(BDB)의 전환금융 논의 배경에 대한 질문 지속가능금융팀에서 작성하신 "Considerations for an EU Framework for Transition Finance" 글에서 녹색금융 만으로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전환금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	유럽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이 일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45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약 2,500억 유로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발표하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2018년,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마 련했다. EU의 핵심 계획 중 하나는 EU Taxonomy이다. EU Taxonomy의 목적은 어떤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한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EU Taxonomy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이미 충족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는 이것을 '진녹색 산업(Dark Green Business)'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진녹색 산업(Dark Green Business)'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체 경제를 전환해야 하며, 특 히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 성하는 과정은 매우 긴 여정이며, 단순히 지속가능성을 이미 충족한 분야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변화를 원하는 산업에도 자본과 금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EU Taxonomy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 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제 활동들이 EU Taxonomy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거나, 녹색금융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에서 금 융 부문이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전환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를 위해 보다 명확한 '제도적 기반(Legal Frame)'을 마련하고 전환금융에 대한 기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 3	전환금융의 정의에 대한 질문 각 국가와 기관마다 '전환'을 정의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DB는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존의 '녹색금융'과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양파에 비유할 수 있다. 양파의 가장 안 쪽 '단단한 부분(Hard Core)'을 '분류체계 적합 (Taxonomy-Aligned)' 이라고 부르며, 이는 EU Taxonomy가 정의하는 '적격성(Eligibility)'과 '적합성(Alignment)'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실제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그 다음의 겉 겹은 녹색 및 사회적 금융으로 정의되며,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여 녹색금융 또는 '사회적 금 융(Social Fina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파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된 전환금융이 있다. 전환금융은 사업을 고탄소 운영 방식에서 저탄소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 과정을 금융과 연결한 것을 의미 한다. 즉, 기업에 지속가능성 목표가 있다면, 이러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전환금융으로의 진행 상황 을 추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금융과 녹색금융을 구분할 때도 양파 모형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풍력 단지나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친 환경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는 대출 혹은 자산은 녹색금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8% 줄이는 것'과 같은 전환 목표에 대한 특정 전환 계획에 동의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전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들은 전환금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질문 4	전환금융이 집중해야 할 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 감축이 어렵고(Hard To Abate),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High Emitting) 산업에 초점을 맞춰 전환금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4	감축이 어렵고(Hard to Abate),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High Emitting) 산업이 전환금융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 지는 분야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이는 각 산업마다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의 특성을 살 펴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이며, 따라서 현재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질문 5	전환금융 시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중기, 장기적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5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1)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 때 책임자는 누구이며 모니터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에 대해 고민한 이후 다음 ‘거버넌스(Governance)’¹⁴¹⁾를 설정해야 한다. 2) 전략 설정 이후에는 기업의 정책과 생산에 이 전략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전략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답변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 전체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내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강한 의지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질문 6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와 전환금융에 대한 질문 한국과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산업 및 경제 구조 하에서 전환금융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답변 6	독일과 EU가 취한 접근 방식은 시장과 기업들이 스스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에 가깝다. 전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정치적으로 정의된 목표(Politically Defined Objective)’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철강 생산이 X년도까지 탄소중립이어야 한다거나, 자동차 산업이 Y년도까지 기후 중립이어야 한다는 ‘정치적으로 정해진 경로(Politically Determined Pathway)’는 세우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탄소세, 즉 탄소 가격이라고 불리는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탄소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물품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접근 방식(Market Base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Market Based Incentive)’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 생산 방식을 금지하거나, 특정 산업이 법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각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2050년까지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의 생산 방식이나 활동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시장 기반 도구(Market Based Instruments)’들이 있을 뿐이다.
질문 7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혹은 전환금융 시행 시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7	현재 전환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없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전환 계획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구체화될 것이다. 1) 전환 계획 수립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문제’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들은 여전히 Scope1과 Scope3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환 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불확실성은 우리의 계획이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질수록 커진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탄소 가격 책정, 소비자 선호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전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또 다른 문제는 ‘소송 리스크’이다.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했을 때, 누군가는 이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평판 위험이나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린워싱 비판 또한 받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에 10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중 2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대중은 이 기업이 탄소중립 경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전 과제가 된다. 불확실성과 동반되는 소송 리스크가 가장 도전과제라고 생각한다. 전환 계획은 30년 동안 ‘순차적(Step-by-Step)’으로 실현되는 계획이 아니라, 항상 조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계획이다. 3)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충분히 안정되어 자본이 투입될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기업은 전환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결국 금융 지원이 가능한 전환 프로젝트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주로 ‘친환경(Green)’, ‘사회적(Social)’, ‘지속가능한(Sustainable)’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금융 상품을 발전시키고 확립해 왔기에, 금융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녹색이거나 ‘사회 지향적인(Social Oriented)’ 프로젝트이다. 전환금융 측면에서도 몇 가지 발전을 볼 수 있는데, 전환금융 관련 거래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근거이다. 그럼에도 전환금융은 시장에서 여전히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전환금융을 위해 제정된 규제적, 법적 또는 정치적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 녹색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은행이나 국제기구의 문서, 혹은 EU Tax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 활동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부족 문제는 주로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¹⁴²⁾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전환금융 거래량이 늘어나면 향후 몇 년 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금융지원 타당성 확보를 통해 전환금융 상품을 확장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예상한다.
질문 8	전환금융 시행 사례 비교에 대한 질문 저희 팀의 최종 보고서에 전환금융 정의, 글로벌 동향 보고 및 K-Taxonomy 활용 방안 제안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산업 및 금융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전환금융 시행 사례 중 어느 나라의 사례가 한국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답변 8	몇몇 은행들의 전환 계획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도이치뱅크(Deutsche Bank)는 2023년, ‘Initial Transition Plan’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이 금융 지원을 줄이려는 분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⁴³⁾ 은행 외에도, 규모가 큰 대기업들부터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전환 계획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 규모에 대한 언급도 보통 포함된다. 나는 이 전환 계획을 금융과 결합시키고, 기업과 은행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BDB는 전환 계획을 평가할 때 리스크 측면도 살펴본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조건이 있다. 즉,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객을 평가하도록 하

	고 있다. 독일은행협회(BDB)가 기업들로부터 알고 싶은 것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 구조(Business Model)’를 변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즉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독일은행협회(BDB)는 기업의 ‘전환 이야기(Transition Story)’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사업 구조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질문 9	중소기업의 전환금융 관련 질문 전환금융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9	‘전형적인 장애물(Typical Barrier)’은 아닐 수 있지만, 독일 중소기업은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대기업과 달리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환경이 그들에게는 다소 ‘도전적인(Challenging)’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은행들이 중소기업에도 전환금융이나 녹색금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아니었다. 녹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 기존의 대출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노력에 비해 녹색 대출을 받는 것이 가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10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신다면, 전환금융과 EU Taxonomy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0	경제 활동이 어떤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하는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류 체계(Taxonomy)를 갖는 것이 기업의 활동 평가와 자금 조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의 EU Taxonomy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유럽과 독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제를 고려할 때, 약 7개 산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향력 측면(Impact Perspective)’에서 현재의 EU Taxonomy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 또한, Substantial Contribution(SC), Do No Significant Harm(DNSH), Minimum Safeguards(MS) 3가지 단계¹⁴⁴)로 이루어져 있는 EU Taxonomy의 ‘적합성(Alignment)’ 판단 기준은 체계가 매우 복잡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Substantial Contribution(SC)는 ‘기후 목표 중 하나 이상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는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Do No Significant Harm(DNSH) 단계로 이동하면, 경제 활동이 하나 이상의 기후 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른 기후 목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가 추가된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른 기후 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충족되는 등의 상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특정 기후 목표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출판물이나 참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EU Taxonomy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건물을 건설하려면 일정 수준의 에너지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EU Taxonomy 내의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Do No Significant Harm)’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건물이 심각한 기후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데, 개별 건물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소 단위 별로 판단할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물이 환경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물이 EU Taxonom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EU Taxonomy가 전환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 지침의 역할에 불과한 이유이다. 현재 EU Taxonomy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

	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Taxonomy의 기본 개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EU Taxonomy는 매우 이분법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즉, 어떤 활동이 친환경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만 구분되며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이다. 그러나, EU Taxonomy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 Taxonomy는 이미 1,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실제로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산업 부문까지 추가하여 확장한다면 세부 사항은 2,000~3,000 페이지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를 확장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신 전환 활동을 지속 가능성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EU Taxonomy 처럼 지나치게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글¹⁴⁵⁾에서도, 추가적인 전환 활동을 ‘기술적 기준(Technical Criteria)’으로만 정의함으로써 EU Taxonomy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서술했다. 이는 지나치게 ‘부담스럽고(Burdensome)’ 결과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 심사 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이 아닌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EU Taxonomy를 활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아니오(No)’이다. EU Taxonomy 는 투자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일 뿐이다. 하지만, 기업 혹은 국가들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같이 은행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과학 기반 목표(Science-Based Targets)’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2050년까지 여러 전환 경로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EU Taxonomy를 적용하는 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과학 기반 목표(Science-Based Targets)’는 다른 방법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

141)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 체계.

142)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이란, 사업의 위험이 분석되고 적절하게 배분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및 금융계약이나 프로젝트계약에서 대주 이익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통해 대상 프로젝트가 PF 대출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함. (김재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 금융계약 및 프로젝트계약에서의 대주 이익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4, no. 1, 2015, pp.23-56.).

143) Deutsche Bank, “[Initial Transition Plan: Status quo and the way forward](#)”, 2023.10.19.

144) 기업은 분류체계 적격 경제활동에 대하여 SC 기준(해당 경제활동이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기여해야 함), DNSH 기준(환경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함), MS 기준(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UN 지침원칙(Guiding Principle), 국제인권장전의 준수 요구(EU Taxonomy Regulation 제18조)와 같이,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모든 기준 충족 시 ‘분류체계 적합(Taxonomy-Aligned)’으로 판단함. (임동순, 박광수, 「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관한 비교연구」, 『유럽연구』 41, no. 4, 2023, pp.1-18.).

145) Frederik Lange, Torsten Jäger, “Considerations for an EU framework for Transition Finance”, 2023.08.25., <https://bankenverband.de/en/nachhaltigkeit/considerations-eu-framework-transition-finance-0>, (접속일: 2025.03.10.).

6 FS-UNEP Centre

- 인터뷰이 : Carola Menzel-Hausherr
- 인터뷰 일시 : 2025년 01월 24일 (금) 9:00
- 인터뷰 장소 : FS-UNEP Collaborating Centre for Climate & Sustainable Energy Finance (이하 FS-UNEP)

1) 인터뷰이 소개

- <https://blog.frankfurt-school.de/author/cmenzel/>
- Head of FS-UNEP Centre
- 지속가능금융, 조직 개발, 환경 및 사회 관리 시스템, 기후 및 환경 관련 재무 공개 전문
- ‘Biodiversity and finance: managing the double materiality’, ‘Supporting the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y of Vietnam’ 저자

2) 인터뷰 목표 및 의의

-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이 국제기구인 UN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후금융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전환금융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전환금융 시행 시 주의해야 하는 산업별 특성, 공급망 관리, 전환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며 민관협력의 필요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함. 독일의 민관협력 우수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 민관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음.

3) 인터뷰 내용 정리

〈표 2-6〉 FS-UNEP 인터뷰 내용 정리

질문 1	인터뷰 기관 소개
답변 1	FS-UNEP는 독일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금융과 은행 분야에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와 영역으로 우리의 연구가 확장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금융과 은행은 여전히 FS-UNEP의 핵심적인 연구 분야이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남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규제, 표준 등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EU는 제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만들고, 국가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Frankfurt School of Finance & Management (이하 우리 대학)에 도움을 요청했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보통 이뤄지는 ‘프로그램 교육(Programmatic Education)’과 달리 이는 ‘맞춤형 지원(Tailored Support)’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었다.

	우리 대학은 이 요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맞춤형 자문, 기술 지원, 교육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였다. 나는 1990년대 당시 ‘미시 금융(Microfinance)’, 소규모 기업 금융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앞서 언급한 새로운 부서 또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시장 환경에 맞춰 시간이 갈수록 연구 분야가 점차 조정되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같은 새로운 주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 부서는 수년에 걸쳐 ‘농업 금융(Agricultural Finance)’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2007년에는 에너지 금융,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 분야를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 에너지 부서는 청정 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해결책,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및 녹색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다루었다. 2009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¹⁴⁶⁾ 과의 협력을 시작하고 FS-UNEP를 설립하였다. UNEP 역시 ‘청정 금융(Cleaner Finance)’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와 달리 정부 부처 혹은 공공 기관과 주로 협력하여 공공 부문 중심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FS-UNEP는 금융기관의 내부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공 기관이 제시하는 지침을 실무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더불어, 민간 지속가능금융 협의체와 정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은 FS-UNEP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UNEP가 맡는 방식으로 우리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 FS-UNEP의 역사와 간략한 배경이다. UNEP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¹⁴⁷⁾도 운영하고 있다. UNEP FI는 1992년 리우정상회담을 계기로 설립된 공공-민간 협의체로, 상업 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 자금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EP는 지속가능금융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협력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 위치한 한 대학 기관은 보다 기술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후 기술(Climate Technology)’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평가 결과는 각국의 NDC를 수립하는 데에 활용되며, ‘기후 솔루션(Climate Solutions)’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FS-UNEP와 UNEP의 차이는, FS-UNEP이 UNEP에 비해 ‘금융 부문의 발전(Financial Sector Development)’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적 이익(Commercial Interes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금융 개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FS-UNEP는 UNEP 뿐만 아니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독일재건은행(KfW), 세계은행(World Bank)등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FS-UNEP의 협력 기관들은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우리 FS-UNEP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에 가깝다.
질문 2	전환금융 정의에 대한 질문 각 국가와 기관마다 ‘전환’을 정의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S-UNEP는 ‘전환’과 ‘전환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답변 2	몇년 전, 기후금융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해 현재까지는 적절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환이란 일정한 목표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행동과정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환금융 정의의 대부분은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를 참조한다. 그러나 파리협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환금융은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 부문과 탄소중립 목표에만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Resilience)’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ACMF, Asean Capital Markets Forum)’¹⁴⁸⁾에서 발표한 ‘아세안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2.0(Asean Transition Finance Guidance Version 2)’¹⁴⁹⁾을 살펴보면,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 부문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차원(Official Level)’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또한 전환과 전환금융에 대해 적절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하는 것을 전환금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전환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몇 년전까지 기후금융, 또는 청정 에너지 금융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전환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아세안 전환금융 가이드선스 2.0’을 살펴보는 것이 전환금융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문서에서는 자산 금융과 기관 금융을 구분하였고, 기관 금융에서 ‘전환 계획’을 언급하였다. 전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의 투자라면, 그 투자가 실제로 전환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심찬(Ambitious)’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금융을 고려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이 의문들은 전환금융을 시행할 때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만약 배출량 감축이나 에너지 절감 만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것은 녹색금융이나 기후금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환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인 경우 전환금융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3	전환금융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혹은 전환금융 시행 시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3	현 시점에서 전환금융을 사용하는 방식은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 부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 -Montreal Global Diversity Framework)’¹⁵⁰⁾ 등의 세부 사항을 언급할 때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응(Adaptation)’이나 자연 관련 위험과 같은 영역은 아직 발전 중인 분야이기에, 야심차고(Ambitious)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금융 감독과 규제 기관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규제 수단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환금융 정의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기후 및 자연 관련 금융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러한 공시 요구가 금융기관들이 기후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도록 설득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환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FS-UNEP의 주요 고객들은 금융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제 금융기관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각 기관의 자본 흐름을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환금융이 그들의 관심 대상에 어느정도 포함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들 중 일부 기관은 내부 절차를 이미 조정하고 자사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한 후, 이 내용을 각 은행의 ‘수익자(Beneficiary)’에게 전달했다.¹⁵¹⁾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금융기관, 각 국가 현지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16-18개의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큰 과제이다. 전환금융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 요구를 기업 전략 등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환금융을 시행하고 있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행되지 않았거나 조직 내 담당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면, 그것은 전환금융이 아니다. 이는 추가적인 노력과 자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전환금융’의 맥락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존의 금융기관 실사에서 수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평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전환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환금융 시행 시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과제이다. 고위 관리자 및 이사회 차원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된 사고방식을 실무자 수준까지 내재화한다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화는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조직 내 심리적 요인과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¹⁵²⁾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질문 4	전환금융 시행 사례 비교에 대한 질문 저희 팀의 최종 보고서에 전환금융 정의, 글로벌 동향 보고 및 K-Taxonomy 활용 방안 제안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산업 및 금융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전환금융 시행 사례 중 어느 나라의 사례가 한국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답변 4	전환금융의 모범 사례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아세안 전환금융 가이드선스 2.0(Asean Transition Finance Guidance Version 2)’나 ‘국제 전환 계획 네트워크(ITPN, International Transition Plan Network)’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제시된 권고 사항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환 계획 및 전환금융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몇 가지 사례를 찾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¹⁵³⁾은 전환 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이 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환 계획을 마련해왔으며, 지속가능금융 부서 내에서도 매우 의욕적인 인물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¹⁵⁴⁾ 전환금융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할 때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전환 계획 문서를 비교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전환 계획이 금융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금융 상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파리협정의 탄소중립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5	중소기업의 전환금융 관련 질문 전환금융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5	전환금융을 이해할 때 중소기업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주제의 영향력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전환금융을 다룰 때 중소기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 여러 국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야심찬(Ambitious)’ 부문별 전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한 눈에 띄는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환금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대기업과 같은 거대한 경제주체의 가치 사슬과 ‘공급망(Supply Chain)’ 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하였다.¹⁵⁵⁾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계획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또한 일부 받을 수 있다.
질문 6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 시행 시, EU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신다면, 전환금융과 EU Taxonomy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	EU Taxonomy의 초기에 전환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EU Taxonomy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 전환금융 및 계획을 추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just one tool)’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대로 수행되고 적용된다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EU Taxonomy를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는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EU Taxonomy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규제와 추가 업무를 귀찮게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전 세계 다양한 경제 체계에 속한 회사들이 EU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 상당히 ‘귀찮았다고(Annoyed)’ 평가했다. 즉, EU Taxonomy는 유용한 도구임과 동시에 실무자들에게 매우 많은 추가 업무를 요구한다. 따라서, EU Taxonomy를 전환금융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실무자들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질문 7	민관 협력을 통한 전환금융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

	전환금융을 위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 금융기관은 산업계, 민간 금융 및 투자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답변 7	이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이나 기관을 대표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전환금융 '실무 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국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후자인 경우, 정부나 기관이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민간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실무진들은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해당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독일은 '지속가능금융 자문 위원회(The Sustainable Finance Advisory Committee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¹⁴⁶⁾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독일의 지속가능금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며, 전환금융과 관련된 하위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전환금융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현실적인 전환금융 정책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금융 업계의 관점을 바탕으로 규제 당국의 기대를 조율하고, 이를 하나의 정책 문서로 통합할 수 있었다. 현재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및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¹⁴⁷⁾와 같은 프레임워크도 결국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최적(Optimum)'의 프레임워크 및 정책들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단순히 나온(just coming out)'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실적인 해결책 및 의견 제시를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자문 위원회(Advisory Board)'와 같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른 국가도 그럴겠지만, 독일의 정부는 자주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 당선될 총리와 그 정당이 설정할 목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꽤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후 정책의 연속성이 흐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질문 8	전환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한 대학이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FS-UNEP의 기후 관련 교육 과정을 찾아보니,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Master of Leadership in Sustainable Finance'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8	야심차고 지속가능한 대학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학과의 강의를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대학의 '주류(Mainstreamed)'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학도 이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금융대학 학과장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와 강의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에는 지속가능금융 및 리더십을 다루는 온라인 석사 과정¹⁴⁸⁾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실무진, 학부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과 같은 개념을 기존 실무 경험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46) UN Environment Programme

147)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148) 아세안 재무부 장관들의 후원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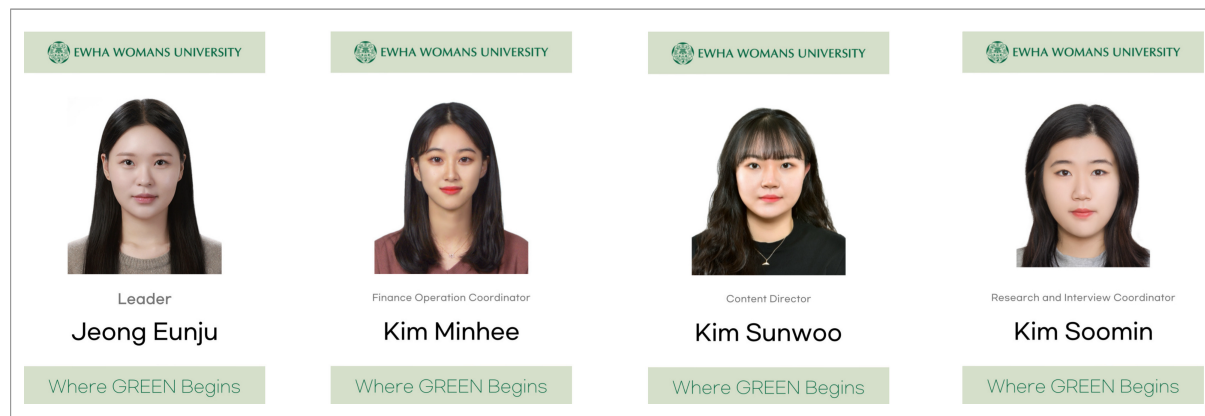
-
-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관할권 내 10개의 자본시장 규제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149) Asean Capital Markets Forum, “[Asean Transition Finance Guidance Version 2](#)”, 2024.10.22.
- 150)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임.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공평하게 공유하면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하고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긴급한조치를 시행하여 사람과 지구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회복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하며,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이행수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박원석,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탄생과 의의」, 『일감법학』 no. 56, 2023, pp.269-304.).
- 151) 수익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2006년 제정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UN PRI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에 ESG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자율 규범으로, UN PRI의 6개 원칙 중 하나인 ‘책임투자원칙의 이행활동과 진행상황을 각자 공개한다’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은 ESG 이슈를 투자 실행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공개하고, ESG 이슈와 책임투자원칙에 관하여 수익자들과 소통해야 함. (전혜영,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투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21.).
- 152) 변화관리 역량은 조직 내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력과 적응성을 반영하며, 조직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도 연결됨. (하선우, 이가빈, 박성민, 「변화관리 인식과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연구: 조직 내 외재적 동기 선행요인 영향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3, no. 3, 2024, pp.21-64.).
- 153) 1969년 설립된 영국계 은행.
- 154) 2021년, 세계 최초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하여 지속가능금융 거래 식별에 사용하고 있음. (“월가에 부는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구축 바람”, <ESG 경제신문>, 2024.12.1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5>, (접속일: 2025.03.10.)).
- 155) 독일의 경제·기후부의 산업 바이오경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실험실 수준에서 산업 규모로 바이오 기반 제품의 규모 확대 및 화석 기반 공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임운택, 「독일의 기후보호 정책과 녹색전환」, 『국제사회보장리뷰』, no. 여름, 2024, p.p.55-66.).
- 156) 2019년 2월 25일 개최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가 장관 위원회’ 협의 결과 설립된 위원회임. 실물 경제, 금융, 시민 사회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 독일 연방 정부 자문 활동을 시작함. ([Sustainable Finance Advisory Committee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 157)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연과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세계자연기금(WWF)과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2021년에 설립됨. 2024년 10월 기준 전 세계 400여 개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TNFD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TNFD 권장 사항에 맞춘 정보를 2025년까지 기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선언함. (“[ESG 용어 1분 해설] TNFD”, <한경ESG>, 2024.11.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24991>, (접속일: 2025.03.10.)).
- 158) [Master of Leadership in Sustainable Finance – Online](#).

[부록3] 자체제작 홍보물 및 국외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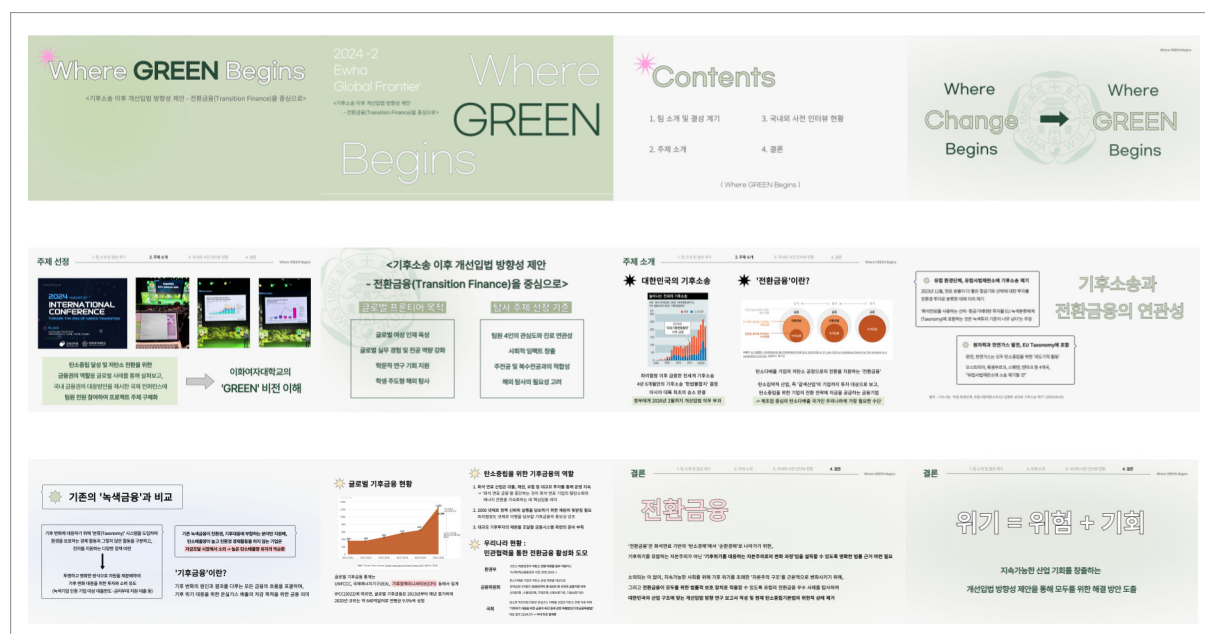
〈그림 3-1〉〈Where GREEN Begins〉현수막



〈그림 3-2〉〈Where GREEN Begins〉명찰



〈그림 3-3〉〈Where GREEN Begins〉PT 자료



〈그림 3-4〉 〈Where GREEN Begins〉 팸플렛

2024 Global Frontier Program

Ewha Womans University's
official slogan "Where Change Begins",
We want to lead "Green" in Ewha,
Where Change Begin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1/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is a school in Seoul, South Korea. It was founded by missionary Mary Scranton in 1886. Currently, Ewha Womans University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female educational institutes and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use of "Womans" means that a women, a person with a unique personality, gathers together and receives a university education together.

02/ Global Frontier Program

Annual summer/winter programs to promote global female leaders. Programs allow teams of 4 students to actively plan and decide on exhibition topics & themes to visi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glob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abroad for two weeks.

Global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organized by the university's Student Affairs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03/ Team <Where GREEN Begins> Members



Jeong Eunju
Leader

Tel
Mail jeunju@ewhain.net

Major Economics
Minor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Climate and Energy Systems Engineering



Kim Sunwoo
Interview Coordinator

Tel
Mail kimrityprio@ewha.ac.kr

Major Statistics
Double Major Sociology



Kim Soomin
Interview Coordinator

Tel
Mail michelle702810@gmail.com

Major Political Science
Double Major North Korean Studies
Min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im Minhee
Finance Coordinator

Tel
Mail 2280006@ewhain.net

Major Political Science
Double Major Economics
Public Leadership & Justice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Legislation After the Climate Lawsuit Ruling – With Transition Finance>

Timeline



Research Abroad Background

South Korea's first climate lawsuit, a constitutional complaint, contested the state's insufficient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s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life rights. Asia, including South Korea, is currently grappling with the absence of a precedent for climate litigation and subsequent procedures. However, if South Korea successfully implements improvement legislation after the climate litigation ruling, it could set a significant precedent. This case has the potential to leave an exemplary footprint as Asia's first climate litigation ruling. In the era of capitalism, the financial sector's influence on society as a whole in modern society, policies taken by the financial sector will play a crucial role in dealing with climate issues.

Research Abroad Topics

Our team decided that "transition finance" is a key solution that allows the presentation of the above problems and a complete reduction roadmap. Transition finance supports the low-carbon conversion of high-emission companies. Under the EU Taxonomy and K-Taxonomy, it enables "brown industries" excluded from green financing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drive sustainable change. In 2021, South Korea introduced the K-Taxonomy, benchmarking the EU Taxonomy established in 2020. However, due to the country's industrial structure, few industrie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K-Taxonomy. Therefore, to ensure a more effective transition, there is a need for transition finance that leverages the existing K-Taxonomy and aligns with South Korea's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al framework.

Research Abroad Country



UK
visit on 16-22, Jan 2025

Despite the urgent need for transition finance in South Korea,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the subject, and the current definition of "Transition Finance" remains unclear and imprecise. The UK, a global financial hub and leader in financial services, has pioneered climate and transition finance by launching a sustainable bond market in 2019. By integrating green and insurance finance with traditional sectors and aligning financial sanctions with legal support, the UK serves as a model for implementing transition finance effectively.



Germany
visit on 23-25, Jan 2025

South Korea often benchmarks European examples, such as the EU Taxonomy, when shaping its environmental policies. Germany, in particular, is a fitting benchmark for South Korea due to its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al structure and high electricity consumption. Additionally, as an EU financial hub and a leader in transition finance, Germany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South Korea to emulate.



EWHA WOMANS UNIVERSITY

〈그림 3-5〉 ITPN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그림 3-6〉 LSE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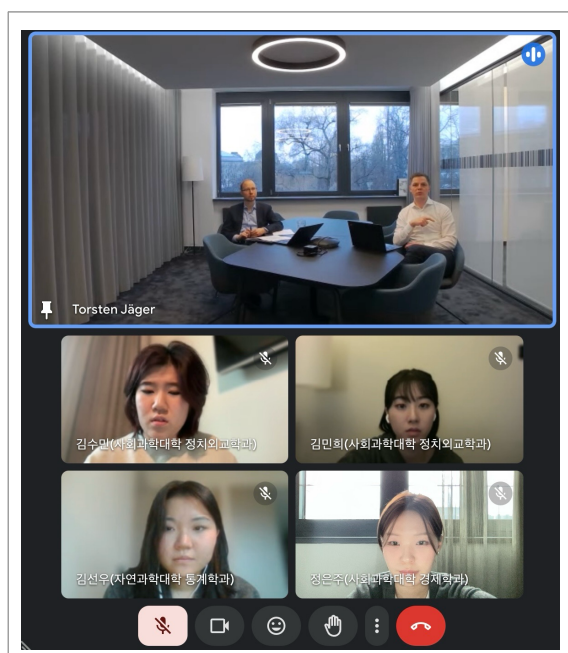
〈그림 3-7〉 TFMR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그림 3-8〉 유럽중앙은행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그림 3-9〉 독일은행협회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그림 3-10〉 FS-UNEP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보고서

- 구준모, 전주희, 이재훈, 임용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 김명섭, 김유라, 이서호, 정세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방안 연구. 한국은행, 2020.
- 박정윤. 기후위기의 대책: 사회책임투자의 이해와 적용. 행복한 부자연구 10, no. 2, 2021.
- 박태현. 기후변화소송: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2019년 3호.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9.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강화. 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2024.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집.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23.
- 양용현.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대한민국금융연구원, 2023.
- 이보람, 손원주.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 이옥수. 환경을 빙자한 이익 추구: 거짓 녹색 (그린워싱). 타우마제인, 2024.
- 이유진, 김병권, 정영주, 최기원, 지현영, 오선아, 오용석, 배보람, 황정화, 강민영.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녹색 전환연구소, 2024.
- 장명화.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
- 자본시장연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 자본시장포커스 (2023-08).
-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방안 연구. 한국은행, 2020.
- Asean Capital Markets Forum. Asean Transition Finance Guidance Version 2. 2024.
- ASEAN Taxonomy Board (ATB).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2021.
- ASEAN Working Committee 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WC-CMD). Report on Promoting Sustainable Finance in ASEAN. 2020.
- Deutsche Bank. Initial Transition Plan: Status Quo and the Way Forward. 2023.
- 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Simplifying the EU Taxonomy to Foster Sustainable Finance. 2025.
- European Central Bank (ECB). ECB Financial Stability Review. 2007.
- European Central Bank (ECB).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 2020.
- European Central Bank (ECB). Thematic Review on Climate and Environmental Risks 2022. 2022.
-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Package 2023. 2023.
- European Court of Justice. Panda and Others v. European Commission. 2018.
- HM Treasury &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 (TFMR): Final Report. 2024.
-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Sustainable Finance - High-Level Definitions. 2020.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 Guidance on Transition*. 2022.
- SBTi. *The Role of Carbon Credits in Net-Zero Pathways*.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2024.
- Setzer, J., and C. Higham.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24.
- Stern Review Team.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D)*. 2006.

학술 논문 및 연구자료

- 김이배, 심동희, 최종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2023.
- 김성진. "유럽의 그린 딜 동향과 시사점." 국토 48, no. 5, 2020.
- 김채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 금융계약 및 프로젝트계약에서의 대주 이익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4, no. 1, 2015.
- 김홍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법제연구 48, 2015.
- 박경원, 이지용.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독일 탈석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4, no. 6-1: 699-713, 2023.
- 박시원.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3, no. 1, 2021
- 송경호. "대한민국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과 산업 역동성." 재정포럼, 2022.
- 임동순, 박광수. "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관한 비교 연구." 유럽연구 41, no. 4, 2023.
- 임운택. "독일의 기후보호 정책과 녹색전환."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2024.
- 이인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 자본시장포커스, 2023.
- 전해영.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2021.
- 최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판결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4, no. 1, 2022.
- 최창민. "ASEAN 지속가능금융 Taxonomy의 검토." 환경법연구 44, no. 2, 2022.
- 최창민.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부합하는 2035 NDC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공정배분 분석." 환경법과 정책 33, 2025.
- 최희재. "녹색금융을 넘어선 '전환금융'의 부상." 금융경영브리핑 14, no. 16, 2024.
- 하선우, 이가빈, 박성민. "변화관리 인식과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연구: 조직 내 외재적 동기 선행요인 영향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3, no. 3, 2024.
- 한철. "기후금융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과학기술법연구 23, no. 3, 2017.
- Patrick, H.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66.
- Glicksman, Robert L. "Climate Change Adaptation: A Collective Action Perspective on Federalism Consideration." *Environmental Law* 40, 2010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가안내] 후속 토론회 -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2024.10.08. <http://climate-strike.kr/5891/>.
- 윤원섭. "2023년 5월까지 제기된 전 세계 기후소송 2341건...그랜섬연구소, '기후위성' 소송 1." 그리니엄. 2023.07.03. <https://greenium.kr/news/26252/>.
- 기후솔루션. "국민연금 기후투자 미뤄져 국민 건강과 기금 수익 위협 '탈석탄 정책 마련하라' 이사장 등에 2050만원 손배소." 보도자료. 기후솔루션. 2024년 2월 22일.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556>.
-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를 위한 녹색채권 조달자금 LNG발전에 유용한 서부발전...금감원 첫 그린위성 사례 되나." 보도자료. 기후솔루션. 2024년 8월 6일.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57>.
- 구현화. "기업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전환 계획이 우선." 한경ESG. 2024.10.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82937i>.
- 녹색전환연구소. "LNG발전 투자가 전환금융? '전환위성' 막는 법." SLOWNEWS. 2025.01.24. <https://slownews.kr/127091>.
- 박지영. "로얄더치셀, 본사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기후소송 때문?" Impact On. 2023.09.2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67>.
- 유인영.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2022년 804만 개 돌파." SBS 뉴스. 2024.08.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1047.
- 유인영. "탄소상쇄권, 탈탄소화 노력 지연시키고 기후금융 감소시켜." Impact On. 2024.08.0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28>.
- 이소현. "천슬라' 일등공신 美펜터카 허츠, 테슬라 2만대 되판 이유." 이데일리. 2024.01.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2806638757064>.
- 이승균. "ESG 용어 1분 해설 탄소상쇄." 한경ESG. 2023.12.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09983i>.
- 이승균. "ESG 용어 1분 해설 TNFD." 한경ESG. 2024.11.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2499i>.
- 이신형.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기후정책 뜯어보니." ESG경제. 2025.01.0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0>.
- 이신형. "ESG 백래시 악화...전환금융이 큰 역할." ESG경제. 2024.01.12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2>.
- 조수빈. "넷제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기후 금융'." 한경ESG. 2021.1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305642i>.
- 최윤민. "법의 언어로 기후위기에 맞서기." 서울대저널. 2023.12.18. <http://www.snuij.com/news/62864>.
- 한국법학원. "[헌재 최신판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4.09.11.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25312>.
- Imogen Foulkes, "Swiss Parliament Defies ECHR on Climate Women's Case." BBC. 2024.06.13. <https://www.bbc.com/news/articles/cl55ggjqvx7o>.
-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s. "Luciano Lliuya v. RWE AG." n.d. <https://climatecasechart.com/non-us->

<case/liiuya-v-rwe-ag/>.

- CSIS. "What's Plaguering Voluntary Carbon Markets?". n.d. <https://www.csis.org/analysis/whats-plaguering-voluntary-carbon-markets>.
- ECB Banking Supervision. "Organisation of Supervision and Oversight for Less Significant Institutions." n.d.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framework/lsi/organisation/html/index.en.html#what>.
- EPA. "What is Superfund?." 2024.10.08. <https://www.epa.gov/superfund/what-superfund>.
- Frederik Lange, Torsten Jäger. "Considerations for an EU Framework for Transition Finance." 2023.08.25. <https://bankenverband.de/en/nachhaltigkeit/considerations-eu-framework-transition-finance-0>.
- ITPN. "ITPN Launches at COP29 to Drive Global Collaboration on Transition Plans." n.d. <https://itpn.global/itpn-launches-at-cop29-to-drive-global-collaboration-on-transition-plans/>.
- Eco-Business.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Putting Money Where the Mouth Is."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Fulcrum), 2022.04.08. <https://fulcrum.sg/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putting-money-where-the-mouth-is/>.

정부 보도자료 및 기관 보고서

- 관계부처합동.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5.02.05.).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490&menuNo=4010100.
- 관계부처합동.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1분야).” (보도자료 2025.01.1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4277&tag=&nPage=1.
- 금융감독원. “이화여자대학교.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컨퍼런스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4.08.12.).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570&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 금융위원회. “미래 변화와 금융의 대응 전략 기초연설.” (보도자료 2025.02.27.).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068&fileTy=ATTACH&fileNo=1>.
- 금융위원회.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보도자료. 2024.12.12.). <https://www.fsc.go.kr/no010101/83595>.
-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2025.01.02.).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033&menuNo=4010100.
- 김재윤, 류기봉, 황재학, 김현진, 김한나, 이한아, 심성보.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한국은행, 2024.
- 박성욱, 장민, 지만수, 박춘성, 김석기, 김남중, 김현태 외 8명, *2023년 경제전망*. 대한민국금융연구원, 2022.
- 윤여창, 오형나, 김지영, 조지혜, 한혜진, 오명진, 류현정,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환경분야*. 대한민국개발연구원, 2024.
- 외교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보도자료 2021.11.14.).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81.
- 환경부, 금융위원회.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보도자료 2020.12.19.). https://www.evinance.kr:442/notice_pop.html.

법령 및 판례

- 대한민국. (20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 헌법재판소. (2024).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 헌법재판소. (2024). 2024. 8. 29. 2020헌마389등, 공보 355, 1409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024학년도 동계 이화글로벌프론티어

Where GREEN Begins